

제337회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11월16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7.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2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 49.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 설치 관련 예외조항 신설 또는 설치조건 완화에 관한 청원
- 50.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5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9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3.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5. 통상임금정상화·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동시간단축·일자리창출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 126. 한국건설안전공단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2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원혜영·안규백·강기정·장병완·이개호·조정식·김관영·민홍철·전해철 의원 발의) 12
-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김광진·최규성·배재정·이개호·김영록·김태년·윤관석·강동원·심재권 의원 발의) 12
-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유승민·황주홍·이한성·정희수·한선교·김제남·박윤옥·김종태·이종진 의원 발의) 13
-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윤호중·신기남·강기정·우원식·박광온·한정애·김현미·신정훈·장하나 의원 발의) 13
-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 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신경림·유의동·강석훈·송영근·권성동·심윤조·손인춘·강은희·유재중 의원 발의) 13
- 7.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종진 의원 대표발의)(이종진·정갑윤·주호영·서상기·유승민·노철래·권성동·이정현·조원진·김상훈·홍지만·양창영·김희국·권은희·윤재옥·류성걸·최봉홍·민현주·김용남 의원 발의) 13
- 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배덕광·류지영·이자스민·문대성·최봉홍·윤영석·이상일·김도읍·김제식 의원 발의) 13
-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나성린·류지영·김태환·이노근·황주홍·이완영·김상민·김정록·신의진 의원 발의) 13
-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안규백·우원식·신경민·서영교·은수미·이인영·이석현·박홍근·심상정·박남춘·김영주·한정애·김제남 의원 발의) 13
- 11.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 12.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이한성·조명철·황주홍·양창영·나성린·류지영·김태환·이노근·이완영·김을동·김상민·김정록 의원 발의) 13
- 13.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진선미·최동익·강동원·이목희·우원식·이인영·송호창·김승남·최규성·윤관석 의원 발의) 13
-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신정훈·안규백·김영록·정호준·박광온·신경민·윤호중·신기남·송호창·김춘진·한정애 의원 발의) 13
-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나성린·류지영·김태환·이노근·황주홍·이완영·김상민·김정록·신의진 의원 발의) 13
-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현미·이목희·이미경·이학영·은수미·장하나·전순옥·한정애·홍종학 의원 발의) 13
-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 18.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배덕광·류지영·이자스민·문대

- 성·최봉홍·윤영석·이상일·김도읍·김제식 의원 발의) 13
1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류지영·유승민·이한성·김정록·조명철·이종훈·박윤옥·이종진·이자스민 의원 발의) 13
2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조정식·변재일·송호창·김관영·전정희·김상희·배재정·윤후덕·한정애·박광온 의원 발의) 13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이개호·황주홍·김우남·박홍근·정청래·김광진·최재성·이학영·서영교·심상정·김제남·우원식·이인영·한정애·은수미 의원 발의) 13
22.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3
2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개호·김성곤·조정식·이윤석·최규성·강창일·진성준·김현·김관영 의원 발의) 13
2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인재근·장하나·배재정·은수미·이인영·한정애·이윤석·이개호·이미경·김현미·박민수·김성곤 의원 발의) 13
2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안규백·김태년·김춘진·이찬열·김상희·이미경·설훈·원혜영·이원욱·심재권·이석현 의원 발의) 14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전정희·홍영표·오영식·조정태·김관영·이찬열·이춘석·한명숙·김성주·윤후덕·최민희·윤관석 의원 발의) 14
2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28.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인재근·류지영·정희수·장운석·강길부·이종배·양창영·박인숙·김상훈 의원 발의) 14
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박남춘·최재성·강기정·장병완·김우남·정세균·김광진·박민수·정청래 의원 발의) 14
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연주·유인태·이춘석·김현미·안규백·윤후덕·변재일·임수경·박광온·김관영 의원 발의) 14
3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정청래·조정식·이개호·박홍근·김상희·장하나·이목희·김영주·이상호·안규백 의원 발의) 14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황영철·최봉홍·경대수·조현룡·주영순·권성동·박창식·김정록·은수미 의원 발의) 14
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을동·이한성·이종진·박성호·이노근·나성린·박덕흠·홍지만·전하진 의원 발의) 14
3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찬열·강창일·최규성·이개호·조정식·김성곤·김관영·김승남·신정훈·이윤석·김영환·김영록 의원 발의) 14
3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박남춘·유승희·김우남·노영민·백군기·황주홍·이찬열·이원욱·김윤덕 의원 발의) 14
3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김기선·김태호·윤명희·윤영석·이만우·이채익·정갑윤·정문헌·함진규 의원 발의) 14
3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배재정·윤관석·박완주·박주선·김성곤·박홍근·임수경·김용익·이원욱 의원 발의) 14
3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김기선·김태호·윤명희·윤영석·이만우·이채익·정갑윤·정문헌·함진규 의원 발의) 14
3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배재

정 · 윤관석 · 박완주 · 박주선 · 김성곤 · 박홍근 · 임수경 · 김용익 · 이원욱 의원 발의) 14

4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 · 인재근 · 정청래 · 조정식 · 이개호 · 박홍근 · 김상희 · 장하나 · 이목희 · 김영주 · 이상호 의원 발의) 14

4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나성린 · 김광진 · 이한성 · 김광림 · 주영순 · 서용교 · 강석호 · 안홍준 · 김을동 · 홍지만 의원 발의) 14

4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양창영 · 김기선 · 김진태 · 황영철 · 송영근 · 박창식 · 유승우 · 이완영 · 이자스민 의원 발의) 14

4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4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 · 황영철 · 최봉홍 · 권성동 · 박창식 · 이강후 · 주영순 · 정문헌 · 김정록 · 조현룡 의원 발의) 14

4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4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권은희 · 김경협 · 김광진 · 김우남 · 김제남 · 박남춘 · 박지원 · 신경민 · 우원식 · 유성엽 · 유승희 · 이개호 · 이인영 · 이해찬 · 전해철 · 진성준 · 최동익 · 최원식 의원 발의) 14

4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 · 양창영 · 류지영 · 김영환 · 문정립 · 이종배 · 윤명희 · 이인제 · 이운룡 · 김성주 의원 발의) 15

4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박덕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

49.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 설치 관련 예외조항 신설 또는 설치조건 완화에 관한 청원(문병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

50.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개호 · 부좌현 · 조정식 · 김우남 · 홍영표 · 유성엽 · 오제세 · 김성곤 · 김태원 · 신정훈 · 이찬열 · 김동철 · 이종걸 · 한정애 의원 발의) 15

5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 · 이학영 · 이개호 · 신기남 · 김민기 · 이미경 · 박홍근 · 김기준 · 김성곤 · 인재근 · 이목희 · 김광진 · 오영식 · 한정애 · 유승희 의원 발의) 15

5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김태원 · 양창영 · 김성태 · 강길부 · 김상민 · 문대성 · 오신환 · 박창식 · 주영순 의원 발의) 15

5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이미경 · 신기남 · 홍종학 · 전순옥 · 은수미 · 윤관석 · 우원식 · 이학영 · 이인영 · 한정애 · 인재근 · 진선미 · 정성호 · 김춘진 의원 발의) 15

5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박남춘 · 유승희 · 김우남 · 노영민 · 백군기 · 황주홍 · 이찬열 · 이원욱 · 김윤덕 의원 발의) 15

5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강기윤 · 강길부 · 강석호 · 강석훈 · 강은희 · 강창희 · 경대수 · 권성동 · 권은희 · 길정우 · 김광림 · 김기선 · 김도읍 · 김동완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민 · 김상훈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영우 · 김용남 · 김용태 · 김을동 · 김장실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록 · 김정훈 · 김제식 · 김종태 · 김중훈 · 김진태 · 김태원 · 김태호 · 김태환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희선 · 김희국 · 김희정 · 나경원 · 나성린 · 노철래 · 류성걸 · 류지영 · 문대성 · 문정립 · 민병주 · 민현주 · 박대동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민식 · 박상은 · 박성호 · 박윤옥 · 박인숙 · 박창식 · 배덕광 · 서상기 · 서용교 · 서청원 · 손인춘 · 송광호 · 송영근 · 신경림 · 신동우 · 신상진 · 신성범 · 신의진 · 심윤조 · 심재철 · 안상수 · 안홍준 · 안효대 · 양창영 · 여상규 · 염동열 · 오신환 · 원유철 · 유기준 · 유승민 · 유의동 · 유일호 · 유재중 · 윤명희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이강후 · 이근현 · 이노근 · 이만우 · 이명수 · 이병석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우현 · 이운룡 · 이이재 · 이인제 · 이자스

- 민 · 이장우 · 이재영 · 이재오 · 이정현 · 이종배 · 이종진 · 이종훈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현승 · 이현재 · 장윤석 · 장정은 · 전하진 · 정갑윤 · 정두언 · 정문현 · 정미경 · 정병국 · 정수성 · 정용기 · 정우택 · 정희수 · 조명철 · 조원진 · 조해진 · 조현룡 · 주영순 · 주호영 · 진영 · 최경환 · 최봉홍 · 하태경 · 한기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중 · 홍문표 · 홍일표 · 홍지만 · 홍철호 · 황영철 · 황우여 · 황인자 · 황진하 의원 발의) 15
5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 · 정수성 · 김정록 · 양창영 · 최봉홍 · 이만우 · 길정우 · 권성동 · 정병국 · 신성범 의원 발의) 15
5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 · 양승조 · 이개호 · 홍영표 · 백재현 · 박홍근 · 김기준 · 이목희 · 이원욱 · 홍익표 · 유승희 · 박남춘 의원 발의) 15
5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 · 박명재 · 송영근 · 김을동 · 강석훈 · 김종태 · 김제식 · 황진하 · 정미경 · 이한성 의원 발의) 15
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무성 의원 대표발의)(강기윤 · 강길부 · 강석호 · 강석훈 · 강은희 · 강창희 · 경대수 · 권성동 · 권은희 · 길정우 · 김광림 · 김기선 · 김도읍 · 김동완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민 · 김상훈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영우 · 김용남 · 김용태 · 김을동 · 김장실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록 · 김정훈 · 김제식 · 김종태 · 김종훈 · 김진태 · 김태원 · 김태호 · 김태환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희선 · 김희국 · 김희정 · 나경원 · 나성린 · 노철래 · 류성걸 · 류지영 · 문대성 · 문정림 · 민병주 · 민현주 · 박대동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민식 · 박상은 · 박성호 · 박윤옥 · 박인숙 · 박창식 · 배덕광 · 서상기 · 서용교 · 서청원 · 손인춘 · 송광호 · 송영근 · 신경림 · 신동우 · 신상진 · 신성범 · 신의진 · 심윤조 · 심재철 · 안상수 · 안홍준 · 안효대 · 양창영 · 여상규 · 염동열 · 오신환 · 원유철 · 유기준 · 유승민 · 유의동 · 유일호 · 유재중 · 윤명희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이강후 · 이군현 · 이노근 · 이만우 · 이명수 · 이병석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우현 · 이운룡 · 이이재 · 이인제 · 이자스민 · 이장우 · 이재영 · 이재오 · 이정현 · 이종배 · 이종진 · 이종훈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현승 · 이현재 · 장윤석 · 장정은 · 전하진 · 정갑윤 · 정두언 · 정문현 · 정미경 · 정병국 · 정수성 · 정용기 · 정우택 · 정희수 · 조명철 · 조원진 · 조해진 · 조현룡 · 주영순 · 주호영 · 진영 · 최경환 · 최봉홍 · 하태경 · 한기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중 · 홍문표 · 홍일표 · 홍지만 · 홍철호 · 황영철 · 황우여 · 황인자 · 황진하 의원 발의) 16
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 · 정수성 · 김정록 · 양창영 · 최봉홍 · 이만우 · 길정우 · 권성동 · 정병국 · 신성범 의원 발의) 16
6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이석현 · 진선미 · 박범계 · 박지원 · 은수미 · 유은혜 · 전정희 · 이종걸 · 김춘진 의원 발의) 16
6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황주홍 · 신경민 · 정청래 · 이목희 · 박홍근 · 장하나 · 조정식 · 이개호 · 최재성 · 전순옥 · 배재정 · 안규백 · 김광진 · 김성곤 · 박남춘 · 양승조 · 김우남 의원 발의) 16
6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 · 이한성 · 송영근 · 류지영 · 박맹우 · 이종배 · 하태경 · 황주홍 · 주영순 · 김을동 의원 발의) 16
6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이개호 · 김광진 · 박지원 · 이미경 · 신기남 · 진선미 · 우원식 · 이목희 · 이인영 · 한정애 · 김상희 · 김춘진 의원 발의) 16
6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 · 황주홍 · 안규백 · 노웅래 · 김성곤 · 이찬열 · 박광온 · 유인태 · 신학용 · 민병두 · 김현 · 정성호 의원 발의) 16
6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 · 황주홍 · 이한성 · 유승민 · 손인춘 · 윤명희 · 최봉홍 · 서상기 · 이정현 · 권성동 의원 발의) 16
6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임수경 · 한정애 · 유인태 · 진성

- 준·유은혜·김현미·윤호중·안규백·이찬열·노웅래·유대운·김현·장병완 의원 발의) …… 16
6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정수성·김정록·양창영·이만우·전하진·권성동·정병국·배덕광·주호영 의원 발의) …… 16
69.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최규성·부좌현·윤후덕·홍영표·인재근·이원욱·오영식·박주선·우윤근·최민희·이목희·박완주 의원 발의) …… 16
70.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이개호·조정식·정성호·한정애·최민희·김광진·장하나·유승희·김성태·홍영표·김기준·임수경·김승남·안규백 의원 발의) …… 16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설훈·안민석·이찬열·배재정·황주홍·김성주·전순옥·박주선·최재성 의원 발의) …… 16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이상직·이개호·신기남·박광운·김영록·신학용·변재일·민홍철·이윤석·이석현·민병두 의원 발의) …… 17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김기식·김기준·김민기·김성주·김영록·남인순·민병두·박수현·박홍근·배재정·신경민·안규백·우상호·우원식·유은혜·윤관석·이목희·이인영·진성준·한명숙·홍익표·홍종학 의원 발의) …… 17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최민희·신정훈·이윤석·최재천·이언주·최원식·한정애·부좌현·이춘석·權垠希·노웅래·김민기·김기준·이원욱·이인영 의원 발의) …… 17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이개호·김영록·이학영·안규백·인재근·김우남·김성곤·윤호중·변재일 의원 발의) …… 17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언주·유인태·이춘석·김현미·안규백·윤후덕·변재일·김경협·도종환 의원 발의) …… 17
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무성 의원 대표발의)(강기윤·강길부·강석호·강석훈·강은희·강창희·경대수·권성동·권은희·길정우·김광림·김기선·김도읍·김동완·김명연·김무성·김상민·김상훈·김성찬·김성태·김세연·김영우·김용남·김용태·김을동·김장실·김재경·김재원·김정록·김정훈·김제식·김종태·김종훈·김진태·김태원·김태호·김태환·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희선·김희국·김희정·나경원·나성린·노철래·류성걸·류지영·문대성·문정립·민병주·민현주·박대동·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민식·박상은·박성호·박윤옥·박인숙·박창식·배덕광·서상기·서용교·서청원·손인춘·송광호·송영근·신경립·신동우·신상진·신성범·신의진·심윤조·심재철·안상수·안홍준·안효대·양창영·여상규·염동열·오신환·원유철·유기준·유승민·유의동·유일호·유재중·윤명희·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강후·이군현·이노근·이만우·이명수·이병석·이상일·이에리사·이완구·이완영·이우현·이운룡·이이재·이인제·이자스민·이장우·이재영·이재오·이정현·이종배·이종진·이종훈·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우·이학재·이한구·이한성·이현승·이현재·장윤석·장정은·전하진·정갑윤·정두언·정문헌·정미경·정병국·정수성·정용기·정우택·정희수·조명철·조원진·조해진·조현룡·주영순·주호영·진영·최경환·최봉홍·하태경·한기호·한선교·함진규·홍문중·홍문표·홍일표·홍지만·홍철호·황영철·황우여·황인자·황진하 의원 발의) …… 17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이개호·김광진·박지원·이미경·신기남·진선미·우원식·이목희·이인영·한정애·김상희·김춘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33) …… 17
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신기남·황주홍·정성호·이개호·우원식·박민수·전해철·김우남·남인순·오영식 의원 발의) …… 17
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윤명희·민현주·민병주·안상수·나경원·박상은·신성범·강석훈·강석호 의원 발의) …… 17

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이개호 · 우원식 · 김제남 · 정청래 · 이미경 · 전순옥 · 김춘진 · 임수경 · 노응래 · 이목희 · 남인순 · 김기식 · 진성준 · 김성곤 · 유은혜 · 김경협 · 박광온 · 진선미 · 강동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7361) 17
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 · 이인영 · 한정애 · 김기준 · 윤후덕 · 추미애 · 우원식 · 김성주 · 이석현 · 유은혜 · 박홍근 · 이개호 · 정호준 · 김광진 의원 발의) 17
8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 · 배재정 · 김춘진 · 최규성 · 박민수 · 이원욱 · 이개호 · 정세균 · 전정희 · 강동원 · 김관영 · 이상직 · 유성엽 의원 발의) 17
8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 · 신경림 · 유의동 · 강석훈 · 송영근 · 권성동 · 심윤조 · 손인춘 · 강은희 · 유재중 의원 발의) 17
8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 · 이인영 · 김영록 · 윤후덕 · 박홍근 · 윤관석 · 김현 · 추미애 · 임수경 · 진선미 의원 발의) 18
8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제 의원 대표발의)(강기운 · 강길부 · 강석호 · 강석훈 · 강은희 · 강창희 · 경대수 · 권성동 · 권은희 · 길정우 · 김광립 · 김기선 · 김도읍 · 김동완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민 · 김상훈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영우 · 김용남 · 김용태 · 김을동 · 김장실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록 · 김정훈 · 김제식 · 김종태 · 김종훈 · 김진태 · 김태원 · 김태호 · 김태환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희선 · 김희국 · 김희정 · 나경원 · 나성린 · 노철래 · 류성걸 · 류지영 · 문대성 · 문정림 · 민병주 · 민현주 · 박대동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민식 · 박상은 · 박성호 · 박윤옥 · 박인숙 · 박창식 · 배덕광 · 서상기 · 서용교 · 서청원 · 손인춘 · 송광호 · 송영근 · 신경림 · 신동우 · 신상진 · 신성범 · 신의진 · 심윤조 · 심재철 · 안상수 · 안홍준 · 안효대 · 양창영 · 여상규 · 염동열 · 오신환 · 원유철 · 유기준 · 유승민 · 유의동 · 유일호 · 유재중 · 윤명희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이강후 · 이군현 · 이노근 · 이만우 · 이명수 · 이병석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우현 · 이운룡 · 이이재 · 이인제 · 이자스민 · 이장우 · 이재영 · 이재오 · 이정현 · 이종배 · 이종진 · 이종훈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현승 · 이현재 · 장운석 · 장정은 · 전하진 · 정갑윤 · 정두언 · 정문헌 · 정미경 · 정병국 · 정수성 · 정용기 · 정우택 · 정희수 · 조명철 · 조원진 · 조해진 · 조현룡 · 주영순 · 주호영 · 진영 · 최경환 · 최봉홍 · 하태경 · 한기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중 · 홍문표 · 홍일표 · 홍지만 · 홍철호 · 황영철 · 황우여 · 황인자 · 황진하 의원 발의) 18
8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 · 백재현 · 박광온 · 서영교 · 이원욱 · 오영식 · 김성곤 · 안규백 · 전해철 · 이춘석 의원 발의) 18
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김현미 · 신경민 · 이목희 · 오제세 · 박주선 · 주승용 · 한명숙 · 이찬열 · 윤호중 · 이종걸 의원 발의) 18
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 · 경대수 · 강길부 · 조명철 · 김광진 · 권은희 · 김상훈 · 양창영 · 이우현 · 정희수 의원 발의) 18
9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이연주 · 황주홍 · 조정식 · 최동익 · 백군기 · 도종환 · 김광진 · 윤관석 · 백재현 · 안규백 · 정청래 의원 발의) 18
9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손인춘 · 송영근 · 이현재 · 백군기 · 정희수 · 김을동 · 이노근 · 강기운 · 홍철호 · 이자스민 의원 발의) 18
9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 · 신경림 · 유의동 · 강석훈 · 송영근 · 권성동 · 심윤조 · 손인춘 · 강은희 · 유재중 의원 발의) 18
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 강창일 · 김성곤 · 김윤덕 · 유성엽 · 윤관석 · 박윤옥 · 장병완 · 장하나 · 전순옥 의원 발의) 18
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

덕·김경협·박광온·윤관석·정세균·이석현·노영민·진성준·김기식·송호창·부좌현·오제세 의원 발의) 18

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이개호·우원식·김제남·정청래·이미경·전순옥·김춘진·임수경·노웅래·이목희·김기식·남인순·진성준·김성곤·유은혜·김경협·박광온·진선미·강동원 의원 발의) 18

9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9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김기준·백균기·심재권·최민희·權根希·안민석·박수현·최원식·김태년·윤호중·은수미·진선미·김기식·이학영 의원 발의) 18

9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명연·김상훈·김현숙·심학봉·양창영·오신환·이현재·조해진·홍지만 의원 발의) 19

10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백재현·박광온·서영교·이원욱·오영식·김성곤·안규백·전해철·이춘석 의원 발의) 19

1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한정애·이학영·우원식·김승남·은수미·박홍근·장하나·이개호·김영주·이석현·인재근·임내현·원혜영·신정훈·황주홍·심상정 의원 발의) 19

10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정수성·김정록·양창영·최봉홍·이만우·전하진·권성동·정병국·배덕광 의원 발의) 19

103.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황주홍·이노근·이종훈·양창영·권은희·조원진·김태원·이한성·이완영 의원 발의) 19

10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변재일·송호창·전정희·김상희·배재정·윤후덕·한정애·박광온·김현 의원 발의) 19

10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진성준·오영식·인재근·최규성·김윤덕·우원식·변재일·윤관석·박홍근·윤후덕·이목희·안규백·김관영·정성호 의원 발의) 19

1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권은희·김경협·김광진·김우남·김제남·박남춘·박지원·신경민·우원식·유성엽·유승희·이개호·이인영·전해철·진성준·최동익·최원식 의원 발의) 19

1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안규백·김영록·정호준·박광온·신경민·윤호중·신기남·송호창·김춘진·장하나 의원 발의) 19

1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조정식·전정희·우원식·박광온·진선미·인재근·이인영·장하나·이석현·김춘진 의원 발의) 19

1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한정애·유인태·진성준·유은혜·김현미·윤호중·안규백·노웅래·이찬열·유대운·김현·장병완 의원 발의) 19

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1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강기윤·강길부·강석호·강석훈·강은희·강창희·경대수·권성동·권은희·길정우·김광립·김기선·김도읍·김동완·김명연·김무성·김상민·김상훈·김성찬·김성태·김세연·김영우·김용남·김용태·김을동·김장실·김재경·김재원·김정록·김정훈·김제식·김종태·김종훈·김진태·김태원·김태호·김태환·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희선·김희국·김희정·나경원·나성린·노철래·류성걸·류지영·문대성·문정립·민병주·민현주·박대동·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민식·박상은·박성호·박윤옥·박인숙·박창식·배덕광·서상기·서용교·서청원·손인춘·송광호·송영근·신경림·신동우·신상진·신성범·신의진·심윤조·심재철·안상수·안홍준·안효대·양창영·여상규·염동열·오신환·원유철·유기준·유승민·유의동·유일호·유재중·윤명희·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강후·이군현·이노근·이만우·이명수·이병석·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우현 · 이운룡 · 이이재 · 이인제 · 이자스민 · 이장우 · 이재영 · 이재오 · 이정현 · 이종배 · 이종진 · 이종훈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현승 · 이현재 · 장윤석 · 장정은 · 전하진 · 정갑윤 · 정두언 · 정문헌 · 정미경 · 정병국 · 정수성 · 정용기 · 정우택 · 정희수 · 조명철 · 조원진 · 조해진 · 조현룡 · 주영순 · 주호영 · 진영 · 최경환 · 최봉홍 · 하태경 · 한기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중 · 홍문표 · 홍일표 · 홍지만 · 홍철호 · 황영철 · 황우여 · 황인자 · 황진하 의원 발의) 19
1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 · 김제남 · 박광운 · 박원석 · 서기호 · 이석현 · 정성호 · 정진후 · 진선미 · 홍영표 의원 발의) 20
1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노웅래 · 김민기 · 이원욱 · 이인영 · 한정애 · 유인태 · 진성준 · 유은혜 · 이찬열 · 김현미 · 윤호중 · 안규백 · 유대운 · 김현 · 장병완 의원 발의) 20
1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정희수 · 김기선 · 김용익 · 신경림 · 류지영 · 김재원 · 이종진 · 김정록 · 김태원 의원 발의) 20
11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노영민 · 이개호 · 김운덕 · 김성곤 · 서기호 · 이원욱 · 정성호 · 전해철 · 황주홍 의원 발의) 20
1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 · 유성엽 · 홍종학 · 최원식 · 오제세 · 주승용 · 박지원 · 김우남 · 추미애 · 강동원 의원 발의) 20
1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이석현 · 진선미 · 이인영 · 박범계 · 박지원 · 은수미 · 유은혜 · 전정희 · 이종걸 · 김춘진 의원 발의) 20
11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안규백 · 황주홍 · 부좌현 · 전순옥 · 이개호 · 양승조 · 최규성 · 김성곤 · 조정식 · 정청래 · 김우남 · 김광진 의원 발의) 20
1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 · 이개호 · 김성곤 · 김운덕 · 부좌현 · 박남춘 · 이찬열 · 정진후 · 이인영 · 우원식 · 김경협 · 김영주 · 장병완 · 전정희 · 변재일 · 주승용 · 강동원 · 김현미 · 강기정 · 원혜영 · 오영식 · 홍영표 · 김기식 · 박홍근 · 김용익 · 김동철 의원 발의) 20
1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정호준 · 추미애 · 이인영 · 한정애 · 우원식 · 홍종학 · 김성주 · 김용익 · 장하나 · 은수미 · 김관영 · 이석현 의원 발의) 20
1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 · 박맹우 · 이한성 · 황주홍 · 김기준 · 김종태 · 강기윤 · 이종배 · 민현주 · 황영철 · 최봉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5934) 20
12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 의원 대표발의)(김한길 · 이개호 · 이찬열 · 서영교 · 김기식 · 김성곤 · 박홍근 · 민홍철 · 유승희 · 안규백 · 조정식 · 황주홍 · 원혜영 의원 발의) 20
12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 · 유승민 · 이한성 · 최봉홍 · 강기윤 · 송영근 · 김종태 · 류지영 · 주영순 · 이정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27) 20
12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제 의원 대표발의)(강기윤 · 강길부 · 강석호 · 강석훈 · 강은희 · 강창희 · 경대수 · 권성동 · 권은희 · 길정우 · 김광림 · 김기선 · 김도읍 · 김동완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민 · 김상훈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영우 · 김용남 · 김용태 · 김을동 · 김장실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록 · 김정훈 · 김제식 · 김종태 · 김종훈 · 김진태 · 김태원 · 김태호 · 김태환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희선 · 김희국 · 김희정 · 나경원 · 나성린 · 노철래 · 류성걸 · 류지영 · 문대성 · 문정림 · 민병주 · 민현주 · 박대동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민식 · 박상은 · 박성호 · 박윤옥 · 박인숙 · 박창식 · 배덕광 · 서상기 · 서용교 · 서청원 · 손인춘 · 송광호 · 송영근 · 신경림 · 신동우 · 신상진 · 신성범 · 신의진 · 심윤조 · 심재철 · 안상수 · 안홍준 · 안효대 · 양창영 · 여상규 · 염동열 · 오신환 · 원유철 · 유기준 · 유승민 · 유의동 · 유일호 · 유재중 · 윤명희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이강후 · 이근현 · 이노근 · 이만우 · 이명수 · 이병석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우현 · 이운룡 · 이이재 · 이인제 · 이자스

민 · 이장우 · 이재영 · 이재오 · 이정현 · 이종배 · 이종진 · 이종훈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현승 · 이현재 · 장윤석 · 장정은 · 전하진 · 정갑윤 · 정두연 · 정문헌 · 정미경 · 정병국 · 정수성 · 정용기 · 정우택 · 정희수 · 조명철 · 조원진 · 조해진 · 조현룡 · 주영순 · 주호영 · 진영 · 최경환 · 최봉홍 · 하태경 · 한기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중 · 홍문표 · 홍일표 · 홍지만 · 홍철호 · 황영철 · 황우여 · 황인자 · 황진하 의원 발의) 20

125. 통상임금정상화 ·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동시간단축 · 일자리창출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인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21

126. 한국건설안전공단법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

12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기국회도 이제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에 이은 예산안 심사로 숨가쁘게 달려온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제19대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향후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4년의 임기 동안 특히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온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오늘 상정하게 될 127건의 법률안과 기존에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600건의 법률안 등 총 727건의 법률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안들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개혁입법 법안처럼 여야를 비롯하여 노사 간에도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혜를 발휘하여 좋은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오신 위원님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자로 새누리당 주영순 위원님께서 국토교통위원회로 가시고 이완영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돼 오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의 보임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반기에 2년 환노위 일을 했기 때문에 친절한 느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 잘 지도 편달해 주시고요.

위원장님이 방금 지적하셨듯이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밤샘 토론을 통해서 환노위 나머지 법안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우리 100만 명이 넘는 청년실업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구국의 일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노동입법 완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해서 심사할 안건은 환경부 소관 법률안 47건과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75건 등 총 127건입니다.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127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으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원혜영 · 안규백 · 강기정 · 장병완 · 이개호 · 조정식 · 김관영 · 민홍철 · 전해철 의원 발의)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 · 김광진 · 최규성 · 배재정 · 이개호 · 김영록 · 김태년 · 윤관석 · 강동원 · 심재권 의원 발의)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유승민·황주홍·이한성·정희수·한선교·김제남·박윤옥·김종태·이종진 의원 발의)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윤호중·신기남·강기정·우원식·박광온·한정애·김현미·신정훈·장하나 의원 발의)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신경림·유의동·강석훈·송영근·권성동·심윤조·손인춘·강은희·유재중 의원 발의)
7.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종진 의원 대표발의)(이종진·정갑윤·주호영·서상기·유승민·노철래·권성동·이정현·조원진·김상훈·홍지만·양창영·김희국·권은희·윤재옥·류성걸·최봉홍·민현주·김용남 의원 발의)
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배덕광·류지영·이자스민·문대성·최봉홍·윤영석·이상일·김도읍·김제식 의원 발의)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나성린·류지영·김태환·이노근·황주홍·이완영·김상민·김정록·신의진 의원 발의)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안규백·우원식·신경민·서영교·은수미·이인영·이석현·박홍근·심상정·박남춘·김영주·한정애·김제남 의원 발의)
11.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이한성·조명철·황주홍·양창영·나성린·류지영·김태환·이노근·이완영·김을동·김상민·김정록 의원 발의)
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진선미·최동익·강동원·이목희·우원식·이인영·송호창·김승남·최규성·윤관석 의원 발의)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신정훈·안규백·김영록·정호준·박광온·신경민·윤호중·신기남·송호창·김춘진·한정애 의원 발의)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나성린·류지영·김태환·이노근·황주홍·이완영·김상민·김정록·신의진 의원 발의)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현미·이목희·이미경·이학영·은수미·장하나·전순옥·한정애·홍종학 의원 발의)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배덕광·류지영·이자스민·문대성·최봉홍·윤영석·이상일·김도읍·김제식 의원 발의)
1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류지영·유승민·이한성·김정록·조명철·이종훈·박윤옥·이종진·이자스민 의원 발의)
2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조정식·변재일·송호창·김관영·전정희·김상희·배재정·윤후덕·한정애·박광온 의원 발의)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이개호·황주홍·김우남·박홍근·정청래·김광진·최재성·이학영·서영교·심상정·김제남·우원식·이인영·한정애·은수미 의원 발의)
22.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2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개호·김성곤·조정식·이윤석·최규성·강창일·진성준·김현·김관영 의원 발의)
2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인재근·장하나·배재정·은수미·이인영·한정애·이윤석·이개호·이미경·김현미·박민수·김성곤 의원 발의)

2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안규백·김태년·김춘진·이찬열·김상희·이미경·설훈·원혜영·이원욱·심재권·이석현 의원 발의)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전정희·홍영표·오영식·조경태·김관영·이찬열·이춘석·한명숙·김성주·윤후덕·최민희·윤관석 의원 발의)
2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인재근·류지영·정희수·장윤석·장길부·이종배·양창영·박인숙·김상훈 의원 발의)
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박남춘·최재성·장기정·장병완·김우남·정세균·김광진·박민수·정청래 의원 발의)
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언주·유인태·이춘석·김현미·안규백·윤후덕·변재일·임수경·박광온·김관영 의원 발의)
3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정청래·조정식·이개호·박홍근·김상희·장하나·이목희·김영주·우상호·안규백 의원 발의)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황영철·최봉홍·경대수·조현룡·주영순·권성동·박창식·김정록·은수미 의원 발의)
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을동·이한성·이종진·박성호·이노근·나성린·박덕흠·홍지만·전하진 의원 발의)
3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찬열·강창일·최규성·이개호·조정식·김성곤·김관영·김승남·신정훈·이윤석·김영환·김영록 의원 발의)
3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박남춘·유승희·김우남·노영민·백군기·황주홍·이찬열·이원욱·김윤덕 의원 발의)
3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김기선·김태호·윤명희·윤영석·이만우·이채익·정갑윤·정문헌·함진규 의원 발의)
3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배재정·윤관석·박완주·박주선·김성곤·박홍근·임수경·김용익·이원욱 의원 발의)
3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김기선·김태호·윤명희·윤영석·이만우·이채익·정갑윤·정문헌·함진규 의원 발의)
3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배재정·윤관석·박완주·박주선·김성곤·박홍근·임수경·김용익·이원욱 의원 발의)
4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정청래·조정식·이개호·박홍근·김상희·장하나·이목희·김영주·우상호 의원 발의)
4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나성린·김광진·이한성·김광림·주영순·서용교·강석호·안홍준·김을동·홍지만 의원 발의)
4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양창영·김기선·김진태·황영철·송영근·박창식·유승우·이완영·이자스민 의원 발의)
4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황영철·최봉홍·권성동·박창식·이강후·주영순·정문헌·김정록·조현룡 의원 발의)
4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권은희·김경협·

- 김광진·김우남·김제남·박남춘·박지원·신경민·우원식·유성엽·유승희·이개호·이인영·이해찬·전혜철·진성준·최동익·최원식 의원 발의)
4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양창영·류지영·김영환·문정림·이종배·윤명희·이인제·이운룡·김성주 의원 발의)
4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박덕흠 의원의 소개로 제출)
49.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 설치 관련 예외조항 신설 또는 설치조건 완화에 관한 청원**(문병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50.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개호·부좌현·조정식·김우남·홍영표·유성엽·오제세·김성곤·김태원·신정훈·이찬열·김동철·이종걸·한정애 의원 발의)
5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이학영·이개호·신기남·김민기·이미경·박홍근·김기준·김성곤·인재근·이목희·김광진·오영식·한정애·유승희 의원 발의)
5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김태원·양창영·김성태·강길부·김상민·문대성·오신환·박창식·주영순 의원 발의)
5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이미경·신기남·홍종학·전순옥·은수미·윤관석·우원식·이학영·이인영·한정애·인재근·진선미·정성호·김춘진 의원 발의)
5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박남춘·유승희·김우남·노영민·백군기·황주홍·이찬열·이원욱·김윤덕 의원 발의)
5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강기윤·강길부·강석호·강석훈·강은희·강창희·경대수·권성동·권은희·길정우·김광립·김기선·김도읍·김동완·김명연·김무성·김상민·김상훈·김성찬·김성태·김세연·김영우·김용남·김용태·김을동·김장실·김재경·김재원·김정록·김정훈·김제식·김종태·김중훈·김진태·김태원·김태호·김태환·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희선·김희국·김희정·나경원·나성린·노철래·류성걸·류지영·문대성·문정림·민병주·민현주·박대동·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민식·박상은·박성호·박윤옥·박인숙·박창식·배덕광·서상기·서용교·서청원·손인춘·송광호·송영근·신경림·신동우·신상진·신성범·신의진·심윤조·심재철·안상수·안홍준·안효대·양창영·여상규·염동열·오신환·원유철·유기준·유승민·유의동·유일호·유재중·윤명희·윤상현·윤영석·윤재욱·이강후·이근현·이노근·이만우·이명수·이병석·이상일·이에리사·이완구·이완영·이우현·이운룡·이이재·이인제·이자스민·이장우·이재영·이재오·이정현·이종배·이종진·이종훈·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우·이학재·이한구·이한성·이현승·이현재·장윤석·장정은·전하진·정갑윤·정두언·정문현·정미경·정병국·정수성·정용기·정우택·정희수·조명철·조원진·조해진·조현룡·주영순·주호영·진영·최경환·최봉홍·하태경·한기호·한선교·함진규·홍문중·홍문표·홍일표·홍지만·홍철호·황영철·황우여·황인자·황진하 의원 발의)
5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정수성·김정록·양창영·최봉홍·이만우·길정우·권성동·정병국·신성범 의원 발의)
5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양승조·이개호·홍영표·백재현·박홍근·김기준·이목희·이원욱·홍익표·유승희·박남춘 의원 발의)
5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박명재·송영근·김을동·강석훈·김종태·김제식·황진하·정미경·이한성 의원 발의)

- 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무성 의원 대표발의)(강기훈·강길부·강석호·강석훈·강은희·강창희·경대수·권성동·권은희·길정우·김광립·김기선·김도읍·김동완·김명연·김무성·김상민·김상훈·김성찬·김성태·김세연·김영우·김용남·김용태·김을동·김장실·김재경·김재원·김정록·김정훈·김제식·김종태·김종훈·김진태·김태원·김태호·김태환·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희선·김희국·김희정·나경원·나성린·노철래·류성걸·류지영·문대성·문정립·민병주·민현주·박대동·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민식·박상은·박성호·박윤옥·박인숙·박창식·배덕광·서상기·서용교·서청원·손인춘·송광호·송영근·신경립·신동우·신상진·신성범·신의진·심윤조·심재철·안상수·안홍준·안효대·양창영·여상규·염동열·오신환·원유철·유기준·유승민·유의동·유일호·유재중·윤명희·윤상현·윤영석·윤재욱·이강후·이군현·이노근·이만우·이명수·이병석·이상일·이에리사·이완구·이완영·이우현·이운룡·이이재·이인제·이자스민·이장우·이재영·이재오·이정현·이종배·이종진·이종훈·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우·이학재·이한구·이한성·이현승·이현재·장윤석·장정은·전하진·정갑윤·정두언·정문헌·정미경·정병국·정수성·정용기·정우택·정희수·조명철·조원진·조해진·조현룡·주영순·주호영·진영·최경환·최봉홍·하태경·한기호·한선교·함진규·홍문중·홍문표·홍일표·홍지만·홍철호·황영철·황우여·황인자·황진하 의원 발의)
- 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정수성·김정록·양창영·최봉홍·이만우·길정우·권성동·정병국·신성범 의원 발의)
- 6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이석현·진선미·박범계·박지원·은수미·유은혜·전정희·이종걸·김춘진 의원 발의)
- 6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황주홍·신경민·

- 정청래·이목희·박홍근·장하나·조정식·이개호·최재성·전순옥·배재정·안규백·김광진·김성곤·박남춘·양승조·김우남 의원 발의)
- 6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이한성·송영근·류지영·박맹우·이종배·하태경·황주홍·주영순·김을동 의원 발의)
- 6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이개호·김광진·박지원·이미경·신기남·진선미·우원식·이목희·이인영·한정애·김상희·김춘진 의원 발의)
- 6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황주홍·안규백·노용래·김성곤·이찬열·박광온·유인태·신학용·민병두·김현·정성호 의원 발의)
- 6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황주홍·이한성·유승민·손인춘·윤명희·최봉홍·서상기·이정현·권성동 의원 발의)
- 6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임수경·한정애·유인태·진성준·유은혜·김현미·윤호중·안규백·이찬열·노용래·유대운·김현·장병완 의원 발의)
- 6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정수성·김정록·양창영·이만우·전하진·권성동·정병국·배덕광·주호영 의원 발의)
- 69.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최규성·부좌현·윤후덕·홍영표·인재근·이원욱·오영식·박주선·우윤근·최민희·이목희·박완주 의원 발의)
- 70.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이개호·조정식·정성호·한정애·최민희·김광진·장하나·유승희·김성태·홍영표·김기준·임수경·김승남·안규백 의원 발의)
-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설훈·안민석·이찬열·배재정·황주홍·김성주·전순옥·박주선·최재성 의원 발의)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이상직 · 이개호 · 신기남 · 박광운 · 김영록 · 신학용 · 변재일 · 민홍철 · 이윤석 · 이석현 · 민병두 의원 발의)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김기식 · 김기준 · 김민기 · 김성주 · 김영록 · 남인순 · 민병두 · 박수현 · 박홍근 · 배재정 · 신경민 · 안규백 · 이상호 · 우원식 · 유은혜 · 윤관석 · 이목희 · 이인영 · 진성준 · 한명숙 · 홍익표 · 홍종학 의원 발의)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최민희 · 신정훈 · 이윤석 · 최재천 · 이연주 · 최원식 · 한정애 · 부좌현 · 이춘석 · 權根希 · 노웅래 · 김민기 · 김기준 · 이원욱 · 이인영 의원 발의)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 · 이개호 · 김영록 · 이학영 · 안규백 · 인재근 · 김우남 · 김성곤 · 윤호중 · 변재일 의원 발의)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이연주 · 유인태 · 이춘석 · 김현미 · 안규백 · 윤후덕 · 변재일 · 김경협 · 도종환 의원 발의)
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무성 의원 대표발의)(강기윤 · 강길부 · 강석호 · 강석훈 · 강은희 · 강창희 · 경대수 · 권성동 · 권은희 · 길정우 · 김광림 · 김기선 · 김도읍 · 김동완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민 · 김상훈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영우 · 김용남 · 김용태 · 김을동 · 김장실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록 · 김정훈 · 김제식 · 김종태 · 김종훈 · 김진태 · 김태원 · 김태호 · 김태환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희선 · 김희국 · 김희정 · 나경원 · 나성린 · 노철래 · 류성걸 · 류지영 · 문대성 · 문정림 · 민병주 · 민현주 · 박대동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민식 · 박상은 · 박성호 · 박윤옥 · 박인숙 · 박창식 · 배덕광 · 서상기 · 서용교 · 서청원 · 손인춘 · 송광호 · 송영근 · 신경림 · 신동우 · 신상진 · 신성범 · 신의진 · 심윤조 · 심재철 · 안상수 · 안홍준 · 안효대 · 양창영 · 여상규 · 염동열 · 오신환 · 원유철 · 유기준 · 유승민 · 유의동 · 유일호 · 유재중 · 윤명희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이강후 · 이균현 · 이노근 · 이만우 · 이명수 · 이병석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우현 · 이운룡 · 이이재 · 이인제 · 이자스민 · 이장우 · 이재영 · 이재오 · 이정현 · 이종배 · 이종진 · 이종훈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현승 · 이현재 · 장윤석 · 장정은 · 전하진 · 정갑윤 · 정두언 · 정문현 · 정미경 · 정병국 · 정수성 · 정용기 · 정우택 · 정희수 · 조명철 · 조원진 · 조해진 · 조현룡 · 주영순 · 주호영 · 진영 · 최경환 · 최봉홍 · 하태경 · 한기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중 · 홍문표 · 홍일표 · 홍지만 · 홍철호 · 황영철 · 황우여 · 황인자 · 황진하 의원 발의)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이개호 · 김광진 · 박지원 · 이미경 · 신기남 · 진선미 · 우원식 · 이목희 · 이인영 · 한정애 · 김상희 · 김춘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33)
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신기남 · 황주홍 · 정성호 · 이개호 · 우원식 · 박민수 · 전해철 · 김우남 · 남인순 · 오영식 의원 발의)
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 · 윤명희 · 민현주 · 민병주 · 안상수 · 나경원 · 박상은 · 신성범 · 강석훈 · 강석호 의원 발의)
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이개호 · 우원식 · 김제남 · 정청래 · 이미경 · 전순옥 · 김춘진 · 임수경 · 노웅래 · 이목희 · 남인순 · 김기식 · 진성준 · 김성곤 · 유은혜 · 김경협 · 박광운 · 진선미 · 강동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7361)
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 · 이인영 · 한정애 · 김기준 · 윤후덕 · 추미애 · 우원식 · 김성주 · 이석현 · 유은혜 · 박홍근 · 이개호 · 정호준 · 김광진 의원 발의)
8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 · 배재정 · 김춘진 · 최규성 · 박민수 · 이원욱 · 이개호 · 정세균 · 전정희 · 강동원 · 김관영 · 이상직 · 유성엽 의원 발의)
8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 · 신경림 · 유의동 · 강석훈 · 송영근 · 권성동 · 심윤조 · 손인춘 · 강은희 · 유재중 의원 발의)

8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 · 이인영 · 김영록 · 윤후덕 · 박홍근 · 윤관석 · 김현 · 추미애 · 임수경 · 진선미 의원 발의)

8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제 의원 대표발의)(강기윤 · 강길부 · 강석호 · 강석훈 · 강은희 · 강창희 · 경대수 · 권성동 · 권은희 · 길정우 · 김광립 · 김기선 · 김도읍 · 김동완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민 · 김상훈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영우 · 김용남 · 김용태 · 김을동 · 김장실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록 · 김정훈 · 김제식 · 김종태 · 김종훈 · 김진태 · 김태원 · 김태호 · 김태환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희선 · 김희국 · 김희정 · 나경원 · 나성린 · 노철래 · 류성걸 · 류지영 · 문대성 · 문정림 · 민병주 · 민현주 · 박대동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민식 · 박상은 · 박성호 · 박윤옥 · 박인숙 · 박창식 · 배덕광 · 서상기 · 서용교 · 서청원 · 손인춘 · 송광호 · 송영근 · 신경림 · 신동우 · 신상진 · 신성범 · 신의진 · 심윤조 · 심재철 · 안상수 · 안홍준 · 안효대 · 양창영 · 여상규 · 염동열 · 오신환 · 원유철 · 유기준 · 유승민 · 유의동 · 유일호 · 유재중 · 윤명희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이강후 · 이군현 · 이노근 · 이만우 · 이명수 · 이병석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우현 · 이운룡 · 이이재 · 이인제 · 이자스민 · 이장우 · 이재영 · 이재오 · 이정현 · 이종배 · 이종진 · 이종훈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현승 · 이현재 · 장윤석 · 장정은 · 전하진 · 정갑윤 · 정두언 · 정문헌 · 정미경 · 정병국 · 정수성 · 정용기 · 정우택 · 정희수 · 조명철 · 조원진 · 조해진 · 조현룡 · 주영순 · 주호영 · 진영 · 최경환 · 최봉홍 · 하태경 · 한기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중 · 홍문표 · 홍일표 · 홍지만 · 홍철호 · 황영철 · 황우여 · 황인자 · 황진하 의원 발의)

8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 · 백재현 · 박광온 · 서영교 · 이원욱 · 오영식 · 김성곤 · 안규백 · 전해철 · 이춘석 의원 발의)

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김현미 · 신경민 · 이목희 · 오제세 · 박주선 · 주승용 · 한명숙 · 이찬열 · 윤호중 · 이종걸 의원 발의)

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 · 경대수 · 강길부 · 조명철 · 김광진 · 권은희 · 김상훈 · 양창영 · 이우현 · 정희수 의원 발의)

9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황주홍 · 조정식 · 최동익 · 백군기 · 도종환 · 김광진 · 윤관석 · 백재현 · 안규백 · 정청래 의원 발의)

9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손인춘 · 송영근 · 이현재 · 백군기 · 정희수 · 김을동 · 이노근 · 강기윤 · 홍철호 · 이자스민 의원 발의)

9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 · 신경림 · 유의동 · 강석훈 · 송영근 · 권성동 · 심윤조 · 손인춘 · 강은희 · 유재중 의원 발의)

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 강창일 · 김성곤 · 김윤덕 · 유성엽 · 윤관석 · 박윤옥 · 장병완 · 장하나 · 전순옥 의원 발의)

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 · 김경협 · 박광온 · 윤관석 · 정세균 · 이석현 · 노영민 · 진성준 · 김기식 · 송호창 · 부좌현 · 오제세 의원 발의)

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이개호 · 우원식 · 김제남 · 정청래 · 이미경 · 전순옥 · 김춘진 · 임수경 · 노웅래 · 이목희 · 김기식 · 남인순 · 진성준 · 김성곤 · 유은혜 · 김경협 · 박광온 · 진선미 · 강동원 의원 발의)

9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

원 대표발의)(김영주·김기준·백군기·심재권·최민희·權根希·안민석·박수현·최원식·김태년·윤호중·은수미·진선미·김기식·이학영 의원 발의)

9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명연·김상훈·김현숙·심학봉·양창영·오신환·이현재·조해진·홍지만 의원 발의)

10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백재현·박광온·서영교·이원욱·오영식·김성곤·안규백·전해철·이춘석 의원 발의)

1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한정애·이학영·우원식·김승남·은수미·박홍근·장하나·이개호·김영주·이석현·인재근·임내현·원혜영·신정훈·황주홍·심상정 의원 발의)

10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정수성·김정록·양창영·최봉홍·이만우·전하진·권성동·정병국·배덕광 의원 발의)

103.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황주홍·이노근·이중훈·양창영·권은희·조원진·김태원·이한성·이완영 의원 발의)

10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변재일·송호창·전정희·김상희·배재정·윤후덕·한정애·박광온·김현 의원 발의)

10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진성준·오영식·인재근·최규성·김윤덕·우원식·변재일·윤관석·박홍근·윤후덕·이목희·안규백·김관영·정성호 의원 발의)

1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권은희·김경협·김광진·김우남·김제남·박남춘·박지원·신경민·우원식·유성엽·유승희·이개호·이인영·전해철·진성준·최동익·최원식 의원 발의)

1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안규백·김영록·정호준·박광온·신경민·윤호중·신기

남·송호창·김춘진·장하나 의원 발의)

1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조정식·전정희·우원식·박광온·진선미·인재근·이인영·장하나·이석현·김춘진 의원 발의)

1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한정애·유인태·진성준·유은혜·김현미·윤호중·안규백·노용래·이찬열·유대운·김현·장병완 의원 발의)

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강기윤·강길부·강석호·강석훈·강은희·강창희·경대수·권성동·권은희·길정우·김광림·김기선·김도읍·김동완·김명연·김무성·김상민·김상훈·김성찬·김성태·김세연·김영우·김용남·김용태·김을동·김장실·김재경·김재원·김정록·김정훈·김제식·김종태·김종훈·김진태·김태원·김태호·김태환·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희선·김희국·김희정·나경원·나성린·노철래·류성걸·류지영·문대성·문정림·민병주·민현주·박대동·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민식·박상은·박성호·박윤옥·박인숙·박창식·배덕광·서상기·서용교·서청원·손인춘·송광호·송영근·신경림·신동우·신상진·신성범·신의진·심윤조·심재철·안상수·안홍준·안효대·양창영·여상규·염동열·오신환·원유철·유기준·유승민·유의동·유일호·유재중·윤명희·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강후·이군현·이노근·이만우·이명수·이병석·이상일·이에리사·이완구·이완영·이우현·이운룡·이이재·이인재·이자스민·이장우·이재영·이재오·이정현·이종배·이종진·이종훈·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우·이학재·이한구·이한성·이현승·이현재·장윤석·장정은·전하진·정갑윤·정두연·정문현·정미경·정병국·정수성·정용기·정우택·정희수·조명철·조원진·조해진·조현룡·주영순·주호영·진영·최경환·최봉홍·하태경·한기호·한선교·함진규·홍문중·홍문표·홍일표·홍지만·홍철호·황영철·황우여·황인자·황진하 의원 발의)

1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 · 김제남 · 박광운 · 박원석 · 서기호 · 이석현 · 정성호 · 정진후 · 진선미 · 홍영표 의원 발의)
1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노웅래 · 김민기 · 이원욱 · 이인영 · 한정애 · 유인태 · 진성준 · 유은혜 · 이찬열 · 김현미 · 윤호중 · 안규백 · 유대운 · 김현 · 장병완 의원 발의)
1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정희수 · 김기선 · 김용익 · 신경림 · 류지영 · 김재원 · 이종진 · 김정록 · 김태원 의원 발의)
11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노영민 · 이개호 · 김윤덕 · 김성곤 · 서기호 · 이원욱 · 정성호 · 전해철 · 황주홍 의원 발의)
1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 · 유성엽 · 홍종학 · 최원식 · 오제세 · 주승용 · 박지원 · 김우남 · 추미애 · 강동원 의원 발의)
1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이석현 · 진선미 · 이인영 · 박범계 · 박지원 · 은수미 · 유은혜 · 전정희 · 이종걸 · 김춘진 의원 발의)
11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안규백 · 황주홍 · 부좌현 · 전순옥 · 이개호 · 양승조 · 최규성 · 김성곤 · 조정식 · 정청래 · 김우남 · 김광진 의원 발의)
1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 · 이개호 · 김성곤 · 김윤덕 · 부좌현 · 박남춘 · 이찬열 · 정진후 · 이인영 · 우원식 · 김경협 · 김영주 · 장병완 · 전정희 · 변재일 · 주승용 · 강동원 · 김현미 · 강기정 · 원혜영 · 오영식 · 홍영표 · 김기식 · 박홍근 · 김용익 · 김동철 의원 발의)
1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정호준 · 추미애 · 이인영 · 한정애 · 우원식 · 홍종학 · 김성주 · 김용익 · 장하나 · 은수미 · 김관영 · 이석현 의원 발의)
1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 · 박맹우 · 이한성 · 황주홍 · 김기준 · 김종태 · 강기윤 · 이종배 · 민현주 · 황영철 · 최봉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5934)
12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 의원 대표발의)(김한길 · 이개호 · 이찬열 · 서영교 · 김기식 · 김성곤 · 박홍근 · 민홍철 · 유승희 · 안규백 · 조정식 · 황주홍 · 원혜영 의원 발의)
12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 · 유승민 · 이한성 · 최봉홍 · 강기윤 · 송영근 · 김종태 · 류지영 · 주영순 · 이정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27)
12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제 의원 대표발의)(강기윤 · 강길부 · 강석호 · 강석훈 · 강은희 · 강창희 · 경대수 · 권성동 · 권은희 · 길정우 · 김광림 · 김기선 · 김도읍 · 김동완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민 · 김상훈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영우 · 김용남 · 김용태 · 김을동 · 김장실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록 · 김정훈 · 김제식 · 김종태 · 김종훈 · 김진태 · 김태원 · 김태호 · 김태환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희선 · 김희국 · 김희정 · 나경원 · 나성린 · 노철래 · 류성걸 · 류지영 · 문대성 · 문정림 · 민병주 · 민현주 · 박대동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민식 · 박상은 · 박성호 · 박윤옥 · 박인숙 · 박창식 · 배덕광 · 서상기 · 서용교 · 서청원 · 손인춘 · 송광호 · 송영근 · 신경림 · 신동우 · 신상진 · 신성범 · 신의진 · 심윤조 · 심재철 · 안상수 · 안홍준 · 안효대 · 양창영 · 여상규 · 염동열 · 오신환 · 원유철 · 유기준 · 유승민 · 유의동 · 유일호 · 유재중 · 윤명희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이강후 · 이군현 · 이노근 · 이만우 · 이명수 · 이병석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우현 · 이운룡 · 이이재 · 이인제 · 이자스민 · 이장우 · 이재영 · 이재오 · 이정현 · 이종배 · 이종진 · 이종훈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현승 · 이현재 · 장윤석 · 장정

은·전하진·정갑윤·정두연·정문헌·정미경·정병국·정수성·정용기·정우택·정희수·조명철·조원진·조해진·조현룡·주영순·주호영·진영·최경환·최봉홍·하태경·한기호·한선교·함진규·홍문중·홍문표·홍일표·홍지만·홍철호·황영철·황우여·황인자·황진하 의원 발의)

125. 통상임금정상화·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동시간단축·일자리창출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인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6. 한국건설안전공단법안(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14분)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7항까지 122건의 법률안과 3건의 청원 그리고 2건의 관련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9항까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11항, 제17항, 제22항, 제27항, 제43항, 제4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7개 법률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됨에 따라 생물자원 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제도적 기반을 서두르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는 외국인 등은 미리 신고토록 하고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도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창출한 이익은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가 공정하게 공

유할 수 있도록 필요 시 국가책임기관이 조정·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수질이 나쁘거나 수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된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등이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복원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에서 산발적·경쟁적으로 추진해 온 방식을 보다 효과 지향적으로 추진토록 유도하고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바닥분수와 같은 물놀이용 수경시설을 신고하게 하여 수질을 관리함으로써 수인성 질환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굴뚝에 설치된 배기가스 자동측정기기를 수탁 관리하는 전문업체를 등록하게 하여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2019년에 추가 발사되는 환경위성의 관측망을 실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가 환경기술의 성능을 평가하여 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기술 수요자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해외시장 진출도 촉진하고자 합니다.

금융기관이 환경관리 우수기업에게 금융조건을 우대하기 위한 심사의 기초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환경 관련 자료를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역학조사 대상을 기존 지역단위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같은 특정 인구집단까지 확대하고 역학조사 시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규명하거나 연구하는 환경보건센터의 기능에 환경보건 교육, 역학조사 지원 업무를 추가하되 센터 지정 시 유효기간을 정하여 부실 환경보건센터는 재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 추가되는 5명은 석면질병 관련 전문의 중에서 선임토록 하여 판정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망 원인이 석면질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던 장의비와 특별유족조위금을 석면질병의 합병

증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서명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 2016년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협약의 규제대상인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이 법의 관리대상 물질에 추가하여 수은 첨가제품의 제조·수출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취급·관리 기준과 친환경적 폐기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무기 수은도 동 법안 적용 대상에 추가해야 함에 따라 법률 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7개 법률안들은 그간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42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의 노트북 바탕화면에 있는 제안설명 폴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손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9항까지 47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47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 중 주요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공기정화설비 등을 매년 세척·소독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이나 건축 법령에서 공기정화설비 등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적으로 규정될 소지가 있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간 업무의 혼선 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임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배출시설을 엄격히 관리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허가 조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 판매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제작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고 인증 규정 준수를 유도하는 등 과징금 부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등록제를 신설함으로써 대기측정기기 운영·관리 안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조치 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는 기간이 1년 더 길어짐으로써 인근 주민 건강과 대기오염 등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징수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중복 규정의 정비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내 물산업 진흥 및 해외진출 지원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정안의 일부 조항이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이라는 제명에 부합하지 않는 점과 특별법으로 제정할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김용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가를 받지 않고 재이용 사업을 한 자 등에 대한 벌금을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주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물재이용정책위원회와 수질및수생태계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두 위원회 모두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석면 질병 관련 전문의의 수를 5명에서 10명 이상으로 늘리고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명칭을 건강피해조사, 건강영향조사 등 센터의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주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수도용 제품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수거 등을 권고하거나 직접 수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위생안전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국민 위생안전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으로 봅니다.

다음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수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제재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자격 제한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기술진단을 하수도법상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환경 피해 방지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술진단 결과 시설 관리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시설 운영자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자체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류 피해 예방 범위 확대,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신고와 관리기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정의 규정의 불명확성, 관리기준 도입에 따른 시설 폐쇄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김용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습지 주변 관리지역에 생태계 교란 생물을 풀어 놓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금을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 등의 법정형 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악취 배출시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기술진단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악취를 줄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은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 및 절차 준수 점검 등 주요 조치에 대한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유전자원의 이용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이용자들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을 제고하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나고야의정서의 비준이 이루어져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일본, 중국 등 주요 가입국의 향후 비준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하위 법령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비준 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으로 비준 절차 개시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지자체의 장이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위반한 조명기구 등을 발견한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당 시·도지사가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정부 위원 중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 공무원을 배제하고 환경부 공무원 1명으로 축소함으로써 민간 위원의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심의의 중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와 함께 국립공원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시 관련 부처와의 정책적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김정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가 자연보호 관련 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연보호 관련 단체의 운영비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자연보호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한 수은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일부 벌칙규정은 징역형 대비 벌금형이 높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측 장비 제작업자 등과 관측 기관은 의무적으로 관측 장비 검정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측 장비의 신뢰성 확보와 검정 업무의 효율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봅니다.

다음은 양창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내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금을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의 민간 위원에게 형법상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

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성 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취소 사유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청문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취소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확인과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신고 면제 확인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업무의 객관성, 공정성 및 영업비밀 준수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 중인 환경산업연구단지에 대해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취지로 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 도입,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사용료 징수 등의 근거 신설,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제도의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 기준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박덕흠 의원이 소개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대청호 특별대책 권역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려는 등 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으로 이에 대해서는 팔당호 지역과의 형평성 도모 및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수질 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문병호 의원이 소개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적재함 설치 관련 예외조항 신설 또는 설치조건 완화에 관한 청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이미 폐가

전제품과 폐가구류 등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재함을 밀폐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청원에 따른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127항까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은수미 위원님!

○**은수미 위원**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분명한 사과나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노동부장관이 노동 입법에 대해서 개인적 혹은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입장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다든가 혹은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자체를 봉쇄하거나 혹은 방해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마치 지시를 하는 것 같은 내용이라면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국정감사 직전에도 노동부장관의 부적절한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오전에 잠깐 파행이 된 경우도 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발언이 이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15일 아시아투데이 인터뷰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법과 관련해서는 진영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업에 채용 확대를 요청하는 것이 맞다. 만약 5대 입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민들의 실망이 굉장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절실하다’, 제가 이 인터뷰 기사를 읽고 지시를 하나……

그리고 지금 여야가 5대 입법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과 저희가 함께 논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든가 그리고 ‘조속한 입법을 해 달라’라는 말을 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의 입법권

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입법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닌가, 의견 차이가 있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닌가, 아니, 우리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 아닌가라는 제가 상당한 우려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께서 사전에 사과를,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적어도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자제하시고 사과하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용남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용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지금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오늘 우리 상임위 회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법안 상정도 해야 되고 대체토론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저는 다른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게 사과를 요구할 일인가, 그리고 오늘 바쁜 날인데 지금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안 된다, 그리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회의의 흐름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나 계실지 대단히 의문이고, 저는 무슨 큰 실언이나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노동개혁 입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안 된다’ 이게 지금 사과를 요구할 발언인지가 대단히 의심스럽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척 많으니까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대체토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원식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우원식 위원** 노동법을 정부가 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노사정 합의가 정상적으로 됐느냐의 문제를 별도로 하더라도 노사정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들, 뒤로 넘겨 놓은 사안들까지 정부가 마음대로 입법을 해서 내놨어요. 그것은 새누리당이 그동안 이야기했고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을 노사정 합의가 되지도 않은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마음대로 내놨단 말이에요. 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국민 대부분을 파견직·용역직·간접고용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최소한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삼권조차 다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 국민들의 노동삼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일각의 정치적 쟁점을 들고나오는 게 아닙니다. 환노위는 환경과 노동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명백하게 잘못된 법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부장관이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진영논리를 벗어나야 된다', 마치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국민 전체를 파견직으로 만들고 간접고용으로 만들어서 노동삼권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법을 반대하면 진영논리에 빠져 있는 거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단을 하고 그것을 또 매도하고, 이게 어떻게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그런 점에서 환경부장관이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위원** 환경부장관이 인터뷰 안 했는데.

○**우원식 위원** 죄송, 노동부장관.

○**위원장 김영주** 자, 여야 두 분씩이니까 마지막으 권성동 위원님께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야당의 논리 또는 여당의 논리를 설명하고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오늘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린 것이고 그러한 야당의 의견은 대체토론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밝히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중단할 만한 요소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야당은 이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야당의 의견, 논리를 개진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또 저희 당 입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노동부장관은 장관의 입장에서 자기가 노동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오랫동안의 경험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도출한 결론에 대해서 관철시키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장관이 그 정도 소신과 철학도 없이 자기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감을 망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의 그런 발언은 국회가 어떤 진영논리라든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그야말로 국민과 노동자를 위해서 편에 서서 모든 문제를 다뤄달라는 그런 절박함, 책임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회의는 이 정도 의사진행발언으로 그치고 진행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정부가 내놓은 5대 입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언론에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국회로 넘어왔고 우리가 상정을 시켜서 소위로 넘기면 정부에서는 가급적 이 법에 대한 최대한의 취지를 설명하고 우리 여야 위원님들을 자극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의 5대 입법은 정치적인 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조기 퇴직을 하는 이런 근로자들의 아픔과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진정한 노동법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우원식 위원** 이것 답변 마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부장관의……

○**위원장 김영주** 잠시만요, 이것은 의사진행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장관님의 답변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127항까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5항, 제59항, 제78항, 제87항, 제111항, 제12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제 의원**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인제 의원입니다.

이른바 노동개혁 입법 법률안 5개 그리고 하나의 절차 법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있을 뿐 사용업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안전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위기 대응에도 취약한 측면이 있어 안전·보건 관리자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또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만을 제한할 뿐 기간제계약의 반복·갱신 횟수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단기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불안 및 계약갱신 과정에서의 부당한 처우 강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아직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2년의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사용기간이 지나면 다른 기간제근로자로 교체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근속기간이 줄어들어 임금격차가 커지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약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은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다만 35세 이상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나치게 단기로 계약을 반복·갱신하는 행태를 제한함으로써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발생 시에도 책임을 지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간제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설명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파견허용업무가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도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으면 선원 등 일부의 업무를

를 제외하고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 대형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가 소홀할 수 있는 문제 및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 시 근로자파견 대가만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파견업체의 중간이윤 착취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파견업체의 과도한 이윤 추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32개 파견허용업무는 유지하면서도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여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고령자의 일자리 확충 필요성에 부응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재취업 촉진 그리고 뿌리산업 등에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의 관련 인력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력난이 심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파견을 허용하여 기업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구난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게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원·하청 상생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는 파견 판단기준으로 보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 시 근로자파견 대가 항목에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관리비, 파견사업자의 순이익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유도하고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이윤 추구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결정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의 개념 및 산입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 내 노사 간 이견과 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의 개념과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연장·휴일근로 등 장시간 근로 관행으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해되고 생산성 하락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1주 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입니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20년간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 수준과 지급 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인한 재취업 지원 기능의 약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었습니다.

이에 구직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 등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위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보험료를 체계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모두 실업급여 적용 제외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이전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모두 동일한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65세 이전부터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입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호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밀도 있게 밤을 새워서라도 6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시고 여야 간에 최대한 타협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이번 정기 국회 안에 국민들이 소망하는 노동개혁 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4항과 제7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의원 존경하는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 장하나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5년 9월 23일에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기본급과 체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월급여액을 산정하는 포괄산정임금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근로시간에 대한 측정 제도가 미비한 관계로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과 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임금 착취가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포괄산정임금계약에 대한 제한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개시와 종료시간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측정·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게 하여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 관리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을 통하여 고용 창출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시간 근로 감소에 개입을 하도록 하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고용정책 기본계획과 같은 국가가 수립하는 시책에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매년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91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간이 생산력과 비례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연장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 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요소임과 동시에 정규직의 과중노동 그리고 낮은 여성 고용률 등으로 이어져서 고용 창출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체적인 노동시간을 줄여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토록 보장하고 나아가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는데 안효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대 의원**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울산 동구 출신의 안효대 의원입니다.

오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근로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근로에 따른 권리와 의무 등 세부 내용은 근로계약에 의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임시직 등 상대적 약자

들을 대상으로 고용주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고 있어 근로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역시 내용 증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고용주들이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악의적인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상 통화로 지급하는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르바이트생 체불임금 10만 원을 10원짜리 1만 개로 지급해서 사회적 공분을 산 바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현행 500만 원의 벌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금을 지폐 또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법으로 정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현행법상 체불임금 발생에 따른 고용주의 이자 지급 의무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재직 중인 근로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에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 재직 중인 근로자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안효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 70항, 제97항, 제1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지난 1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입니다.

첫째, 도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하청 근로자를 위한 원청 사업주의 재해 예방 조치의무가 부과되는 장소를 붕괴·화재 등

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20개소에서 원청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산재 은폐 근절을 위하여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특히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임신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를 안내하고 출산휴가 미부여 등 위법 사례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자격 신설·폐지와 같이 보다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속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64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과 청원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바탕화면에 있는 제안설명 폴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양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 50항부터 제127항까지 78건의 법률안과 청원 및 관련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전문위원입니다.

75건의 법률안, 1건의 청원, 2건의 관련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51항부터 53항까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가운데 제51항 이인영 의원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를 20명에서 12명 이내로 축소하고 이사회를 노사정 동수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공제 가입 대상인 건설근로자들의 이익이 공제회 운영 과정에

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적정한 이사 구성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의 제52항 최봉홍 의원안은 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의 권고임금을 고시하도록 하고 임금지급보증제도를 실시하며 건설기계 1인 사업자를 피공제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건설근로자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부터 56항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가운데 3쪽의 제56항 김용남 의원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실업급여 미적용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한정하고 산재예방요율 적용기간 내에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내에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 등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60항까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4쪽 제59항 김무성 의원안은 구직급여를 인상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며 반복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구직급여 기여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직급여 기여 요건 강화 등은 조정 필요성과 실업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하단의 의사일정 제62항부터 제66항까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 가운데 우원식 의원안은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명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의 탄력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될 우려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의 의사일정 67항 및 68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가운데 제67항 김영주 의원안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윤리의식에 대한 평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비위행위를 근절하는 취지에서 타당하며 우리 위원회의 공인노무사의 의무·징계등을 강화하는 다수의 법률안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의 의사일정 제71항부터 83항까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3건 가운데 제71항 이인영 의원안은 임금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서면

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서면 미교부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영세사업장 부담 등을 고려하여 노력의무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 하단의 제75항 김영주 의원안은 근로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근로장소·종사업무를 포함하도록 하고 해고예고제도의 예외사유를 축소하려는 내용으로, 근로자 보호와 국민의 법 인식 제고의 측면에서 적절하며 근로자의 보호와 사용자의 경영상 자율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 제78항 김무성 의원안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취지이며 구체적인 규정 방식과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노동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1쪽, 제83항 은수미 의원안은 통상임금을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의하고 제외 금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는 내용으로, 김무성 의원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쪽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87항 이인제 의원안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적 연장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4쪽의 제89항부터 92항까지, 94항부터 97항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제90항 이자스민 의원안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변경하여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쪽의 의사일정 99항 및 제101항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가운데 제101항 이인영 의원안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시간에 한정하여 한도를 정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시간으로만 정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목적과 노사관계 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0쪽의 의사일정 제111항부터 제11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가운데 제111항 원유철 의원안과 제112항 심상정 의원안은 출퇴근 재해를 확대하여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호하고 자동차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원유철 의원안은 일탈·중단 시에 적용 예외가 있으며 적용 제외 직종을 규정하고 있고 중과실에 대한 급여 제한이 있으며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상정 의원안과 차이가 있으므로 심사 과정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3쪽의 의사일정 제121항부터 123항까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가운데 24쪽의 제123항 양창영 의원안은 최저임금 위반의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나 최저임금 연대책임을 미이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형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법상 과태료만 부과하게 되어 처벌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4항 이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파견허용업무 확대에 대해서는 고용 촉진의 필요성과 파견근로자의 증가 우려가 동시에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5항 이인영 의원이 소개한 청원과 2건의 관련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와 기상청 및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과 청원 그리고 관련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고 필요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완영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네요.

그러면 이석현 위원님 오셨는데 이석현 위원님 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준비 되셨나요?

○**이석현 위원** 예, 됐습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가지고 다닙니다.

노동부장관, 먼저 5개 법안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할 법안이 아니라 신중하게 처리할 법안이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이걸 가지고 시간을 두고 각계 의견도 수렴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통과시켜도 통과시켜야 된다, 통과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서둘러대는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9월 15일 노사정은 청년들 일자리를 더 만들고 현재 일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룹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3대 상생을 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5대 입법을 포함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 또 현장에서 노사 당사자가 고쳐야 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고용절벽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일 자리를 좀 더 해소해 보자는 취지가 있고요, 따라서 제가 기본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은 이 법들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논의하고 하는 것은 전제로 하더라도 금년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를 해 주셔야 내년에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러면 제가 이 5대 법안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를 조목조목 설명을 할게요.

먼저 기간제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연한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정규직을 줄

이고 정규직을 늘려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파견법을 보면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파견을 줄이고 직접고용을 늘리자는 게 원래 파견법의 목적인데, 그래서 파견 대상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개정안을 보면 파견 대상을 오히려 확대를 하고 있어요.

또 근로기준법은 지금 법률로 규정된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고 또 연장근로수당은 오히려 줄이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고용보험법은 기여 요건을 강화해 가지고 인턴과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간 근로로 고생하는 청년들에게, 아까 청년을 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고용보험의 문턱을 높인 것이고 또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줄여 가지고 실직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끝으로 산재보험법안도 출퇴근 재해를 전면 시행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자는 2017년부터 그리고 자가용 이용자는 2020년에 가서야 적용하자고 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법안이 근로여건을 악화시킬 그럴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장관은 청년실업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정기국회 내에 꼭 통과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년이 취직을 한다 한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일자리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지금 노동자들이 1900만 명인데 1900만 노동자들을 외면하면서 민생을 위한다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더구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하고 또 파견대상 확대는 지난 노사정 대타협 때도 합의가 안 됐던 거고 나중에 더 논의하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장관 말하고는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신중하게 환노위에서 보류하고서 깊이 있게 각계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부의장님께서 5대 입법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토대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동안의 안정성이 저는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

특히 35세~55세 사이의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는 일이 끝날 즈음해서 또 그 안에 정규적으로 전환되는 비중이 9%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부가 일하는 기간을 개입하지 말거나 더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80% 이상이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기간, 파견이 늘어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기간이나 파견을 썼을 때는 정규직 쓰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게 해서, 다른 나라는 고용의 유연성 차원에서 소위 비정규직을 쓰지만 우리는 고용의 유연성과 인건비 절약 두 가지 차원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쓰는 것은 방지하겠다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외침이지 기간제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연장해 달라는 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주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간제로 고착화시킬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아까 지적한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제 부분에 있어서 첫째는 기간제로 기간제 문제를 다 풀 수가 없다 저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정규직 노동시장의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관계의 공정성 그다음에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기업들이 가급적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해 주는 것이 기간제를 줄이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정규직 노동시장에 관한 법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관한 법이 동시에 입법되어야 함을 저는 강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서 현재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공공 부문에서 선도를 한달지 또 보조금을 조금 더 확대 지원해서 정규직으로 유도하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진국에서도 통상 기업들이 고용의 유연성 차원에서 한 20% 정

도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지나치게 모두가……

○이석현 위원 우리는 비정규직이 몇 %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보기에는 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것은 실현성이 낮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를 묻고 그분들 입장에서 해법을 찾는 게 맞다라고 봐서 저는 기간을 희망한다면 2년에서 4년으로 연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이행을 안 한다면 퇴직금 외에 이직수당을 주도록 해서 정규직으로의 이행을 좀 더 유도해 보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파견법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간 97년 IMF 이후에, 우리 고용노동시장이 정규직에서 IMF 직후에 기간·파견제를 활용하다가 기간·파견제가 규율이 되면서 하도급 용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용역으로 가면 파견에 있는 것보다 10% 이상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약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고용구조를 정규직, 만약에 정규직이 어렵다면 법의 보호를 받는 기간·파견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파견은 용역이나 도급에 있는 근로자들이 가급적 파견의 영역으로 오도록 하자는 취지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고령자랄지 전문직에 대해서는 일할 기회를 넓히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법 관련해서는 현재 68시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같은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일시에 할 거냐, 단계적으로 할 거냐라는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근로자들한테 다 물어봐도 급격스럽게 단축을 했을 경우에는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그렇게 대다수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4단계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급하고 있는 수당은 저희들이 줄인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선진국도 최소한 1년 이상의 기여 요건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급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급기간을 넓히면서 기여 요건은 확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

니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에 한 달을 늘렸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 기준으로 봐서 한 20%, 지급률로 보면 2% 정도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급 기간을 한 달 늘리는 것뿐만 아니고 지급 수준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올리기 때문에 그 수혜율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관련해서 출퇴근 재해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들 먼저 시행을 하고 정착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본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단계별 도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다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첫 질의는 다섯 가지 법에 대해서 다 일일이 제안설명이나 거기에 답을 하셨는데 다음 위원님들 질의에는 좀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위원님 질의 및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위원입니다.

노동부장관님,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에서 활동한 결과가 우리 여당에서 이인제 의원님 대표발의로 5대 개혁 입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경제 성장의 주역이 누구인가, 우리가 흔히 자본·토지·노동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우수한 인재, 노동력으로 지금 중진국 이상의 대열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평가하면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최근에, 특히 IMF 이후에 우리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또 어떤 면에서 WEF의 평가를 보면 국가경쟁력은 26위로 아주 괜찮은데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에는 83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장의 우리 노동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노동시장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서 한편 우리 고령화시대에 우리가 정년 60세라는 중장년의 고용 안정을

기하는 법이 이미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그렇지요? 반면에 또 청년 일자리는 우리 IMF 때 이상으로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일자리를 못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이 청년 100만 명 이상을 누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완영 위원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또 하나는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그 투자가 고용으로 연결되는 우리 사회의 소위 성장의 고용창출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전제조건들이 노동시장의 효율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 만들어 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고 또 외투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 만들고, 기업이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가 너무 경직성이 있다 이런 점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이 해고를 마음대로 못하니까 못 들어오겠다 이런 외투기업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꿀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혁 입법에 있듯이 여러 가지 좀 유연성 있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보는데요.

비정규직 문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야당 위원님들이 노사정 대타협이 안 된 파견법, 기간제법을 왜 우리가 발의했느냐, 그래서 더 반대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17년 만에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서 실업자들의 사회안전망, 통상임금 정의, 근로시간 단축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완영 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법, 파견법에 대해서 대타협이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노사정? 지금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금 오늘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합의될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좁은 의미의 타협안이 나와도 제일 좋겠는데요. 지금 장관님께

서 타협안이 안 나오면 우리 공익전문위원 안이라도 도출을 해서 우리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 법을 처음에 제정할 때도 그때 노사정위원회에서 근 2년간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합의가 안 되어서 공익위원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었고 그를 토대로 입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합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의견을, 또 시장의 미래를 놓고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깊게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우리 기간제법, 파견법에 대해서 노사정 합의가 없이 우리 여당에서 발의가 된 데 대해서 큰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대타협안이 안 나오더라도 이미 이 논의는 국회의 공으로 와 있다, 여당이 발의를 한 만큼 충분히 우리 새누리당 특위안을 가지고 기간제법, 파견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서, 우리가 야당에서도 또 제안할 법이 있다고 저는 보여요, 이 두 법에 대해서.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완영 위원** 그렇게 해서 야당의 의견도 받고 우리 여당의 발의된 것도 해서 충분히 논의해 나가야 되지 대타협안이 없다고 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어떻게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기간제법, 파견법과 관련해서 그간 논의 과정을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두 법은 이번 8월 27일부터 재개된 노사정위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작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의 비정규직전문위원회를 가지고 끝없이 4개월 이상 논의를 했었고요. 그 전에 2008년도에도 1년 이상 노사정이 논의를 하고 또 국회 입법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지금의 이 문제는 논의를 계속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지금은 이제 결심을 해야 될 시기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완영 위원** 자, 장관님, 시간이 많지 않은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완영 위원** 자,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3만 불 이상 되는 유럽의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기간제가 됐든 시간제가 됐든 상당히 우리가 말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또 차별 없이 많이 확산되어 있고 우리가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우리 여야 위원들께 뿌려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뿌려 주시고, 또 특히 자동차 업계도 보면, 토요타나 독일의 자동차 업계 보면 우리 현대자동차 이상으로 비정규직 쓰고 있는 것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아까 제가 비율을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도 왜, 일자리라는 게 꼭 비정규직이라고 불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일자리 특징이 어차피 계약직이나 기간제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파견제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좀 더 만들어서 여야 위원들께 좀 배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에서도 불가피하게 유연성 차원에서 일정 비율을 활용하고 그 경우에는 처우를 약간 더 해서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수원 출신 김용남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김용남 위원** 우리가 95년도부터 지자체 단체장을 뽑아 왔으니까 지금 지방자치체도를 실시한 지가 만 20년 됐는데요, 만 20년 되다 보니까 요새 그 폐해가 점차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자체 단체장들이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하고 있고요. 정치를 하는데, 국회보다 더 정치만 생각하는 일부 단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뭐 야당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

야 공히 일부 단체장들의 행태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국민을 바라보고 좋은 정치를 하면 다행인데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일부 단체장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오늘 지금 질의드릴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시내버스에 측면 광고를 하려고 한 적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11월에 저희들이 광고를 처음……

○**김용남 위원** 서울시에서 여론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불허한 사실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보니까요, 지난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그때는, 지금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려고 했던 버스광고가 버스 한 100대 정도의 측면에 이렇게 부착하는 거였지요, 측면 광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희 측면에다가 ‘입법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3년도에 무상보육을 촉구하는 내용을 서울지역 버스 350대에 부착을 했고 그땐 지하철에도 광고를 했고 또 음성광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붙여 놓으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인데 그 안에 타고 있는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음성광고를 하면 안 들으려면 양쪽 귀를 막는 수밖에 없었던 말이지요.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노동개혁과 관련한 입법을 촉구하는 고용노동부의 광고는 여론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불허를 했는데 그러면 2년 전에 서울시에서 했던 무상보육 관련한 광고는 여론을 통합하는 광고고 지금 노동개혁과 관련한 광고는 여론 분열 광고다, 서울시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는 저희 광고가 말 그대로 입법을 가급적 빨리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자는 거고, 이게 또 저희 부 입장만이 아니고 정부 전체의 어떤 사항이고 더더욱이나 노사정 합의사항이고 또 우리 국민들 3분의 2 이상이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청년과 장년이 상생하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갈등을 조장한다고 저희들 보지 않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당연히 버스광고에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서, 일부 지방단체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바라보고 행정은 안 하고 이렇게 정치행위에만 골똘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이번 버스광고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소위 청년수당과 관련해서도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서울시는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소위 청년수당이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2하고 또 유사·중복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그런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각국, 유럽의 각국, 또 지난 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일자리 없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갖도록, 그러니까 국가, 공공기관의 고용서비스를 전제로 서비스받는 기간에 좀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비 변상적인 부분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일자리를 찾는 노력이라는 청년들의 의무와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한다는 정부의 의무 그래서 쌍방 간의 의무가 전제돼 있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정부도 지난 12년부터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취업성공패키지로 인해서 길게는 6개월까지 훈련을 받을 때 안심하고 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고용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좀……

○**김용남 위원** 이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용노동부장관님하고 끝장토론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끝장토론이 잡히면 장관님 응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도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 신문을 보고 알았고요. 그 뒤로 저도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 전체 청년 110만 명이 지금 일자리 못 가지고 있지만 내년부터 40만이 추가되기 때문에, 150만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토론을 할 생각이구요.

또 지난주 주말에 모 방송국에서 그런 어떤 의견들이 오가서 저희 실무자들이 저희는 반드시 가서 출연해서 토론하고 싶다고 제의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방송토론, 방송시간이 잡히는 대로 적극 임해서 일부 단체장들이 행정은 신경 안 쓰고 정치 행위에만 몰두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좀 명명백백하게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김용남 위원** 그리고 지금 FTA와 같은 양자 협정이 됐든 TPP와 같은 다자간의 협정이 됐든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홍선대원군 때처럼 쇠국정책을 펼치고 있다면 별론이겠습니까만 이런 개방화 시대에 노동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산업 기반은 떠나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산업 기반은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는 명확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노동개혁에 실패한 일부 남부 유럽 국가는 지금 청년실업률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지요?

그래서 절실한 상황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번 개혁이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 이번 노동개혁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선진국에서 경험한 바에 의해서, 절실했음에 의해서 지금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여야 대표님들께서 시정연설하시는 자료에 봐도 앞으로 3~4년간 대한민국의 청년고용절벽은 다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5대 입법을 포함해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하면 모든 부분을 좀 금년 안에 터를 잡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이인제 위원님 오신 거 뒤늦게 제가 환영합니다.

○**이인제 위원** 감사합니다.

○**심상정 위원** 예전에 장관이실 때 제가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관님 시절

에 아주 감동적인 말씀 두 가지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는 ‘답이 알을 낳지 못해도 모이는 쥐야 된다’, 그때 당시에 무노동·무임금 논란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많은 노동자들의 공감을 얻으셨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기권 장관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 ‘정부 부처 중에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편에 서지 않으면 도대체 어느 부처가 노동자의 편을 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인제 위원께서 새누리당은 전경련을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법 발의를 대표로 하셨지만 그러나 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자들에게 존경받는, 존중받는 그런 장관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최근에 참 실망스럽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기간제는 일하는 동안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데, 2년 뒤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게 기간제법의 취지 아닙니까? 2년 뒤에, 2년 동안 기간제 하고 상시근로일 경우에 정규직화하는, 2년 뒤의 안정성을 강조한 게 원래 기간제법의 취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심상정 위원** 조금 이따 말씀하세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심상정 위원** 그다음에 정규직화는 ‘직접 기업들이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저는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게 평생 비정규직법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간제 2년을 4년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기업들이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일입니까, 아니면 거꾸로 일입니까?

그동안에는 2년마다 교체 사용을 하는 부담 때문에라도 그나마 무기계약직이라도 전환을 하던 사용자들도 이제 전환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기간 연장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의 희망고문만 길어지고 그나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 없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거는 제가 조금 답을 드리고……

○**심상정 위원** 잠깐만 주세요, 잠깐만 주세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기간제 노동자들 82.3%

가 기간제에 대한 연장을 원했다,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의 뜻을 받들어서 기간제법을,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드렸는데 자꾸만 이렇게 장관께서 거짓말하시면 안 되지요.

이 문항에 2년 이상은 상시·지속적 업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 문항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정규직으로 가는 길은 다 차단해 놓고 ‘정규직은 니들 갈 생각 하지 마라. 그러니 기간이라도 연장할래, 말래?’ 이 문항 아니에요, 이거 지금? 행정부가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심상정 위원** 아니, 그 문항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전체적인 설명 제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런 취지는 다……

○**심상정 위원** 누누이 들었습니다, 누누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런 취지는 워낙 많은 비정규직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심상정 위원** 아니, 비정규직 논쟁이 아니라……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기간제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기 직위와 자기 업무에서……

○**심상정 위원**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이.

○**이완영 위원** 들어보세요, 장관 말씀을.

○**심상정 위원** 아니, 말씀……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간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심상정 위원** 원하는 게 뭔가 해서, ‘82%가 기간제 연장을 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적어도 정규직, 2년 이후에 정규직화하는 문항을 같이 넣어야지 그건 쪽 빼고서, 그러면 정규직 가는 길은 없으니까 그것 틀어막아 놓고 나서 그래 가지고 질문해 가지고 82.3% 팔 비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비정규직의 기간 연장을 묻는 질문 안에 현실적으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라는 취지에서 여러 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이것이 기업들이……

○**심상정 위원** 아니, 문항에 있어요, 없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 그런 취지들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위원** 어디에 녹아들어 있어요? 문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지금 말 따먹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게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한 거잖아요.

○**심상정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면 장관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심상정 위원** 기간제 노동자들의 뜻을 이렇게 왜곡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현실에서는 35세 이상의 정규직 전환율이 9%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심상정 위원**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규직화를 절박하게 원하지만 전경련의 요구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기업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불편을 안 느낍니다. 기업에서는 그렇게 비용을 추가하면서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심상정 위원**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면 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리고 모든 언론이 있는 데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 봐도 대다수 근로자들이……

○**심상정 위원**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뭐예요? 정규직화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기간제법 취지가 뭐예요? 2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정규직화하겠다는 게 취지예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적어도 행정부의 장관이 어떤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려면 사기를 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그래서 그 법을 8년 이상 시행을 했는데 35세 이상은 정규직 전환비율이 9%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심상정 위원** 어떻게 박근혜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나머지 90%는 어떻게 해야……

○**심상정 위원**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제가 묻겠어요. 어떻게 기간제 연장 법안에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할래, 아니면 그만 둘래?’ 그 질문만

있고 원래 기간제법의 취지인 정규직 전환이라는 선택지는 왜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상정 위원 그거 공약 아니에요, 그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공 부분은 가급적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부분에는 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를 더 확장해서 그렇게 유도하는데, 다만……

○심상정 위원 여야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걸로 아까 말씀한 9%를 더 올릴 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에……

○심상정 위원 여야가 아까 이인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허심하게 진지하게 논의해보자는 데 저 동의합니다. 그러려면 진솔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빼 놓고 이걸 마치 기간제 노동자들의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되지요. 그럼 대화가 안 됩니다.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학계에서 조사한 부분은 저희들은 믿어 줘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심상정 위원 양심이 있어야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다음에 다수의……

○심상정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드렸는데 계속 그 인용을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언론과 공개된 장소에서 우리 기간제·파견 근로자들과 법의 취지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다시 들어도 현재의 대기업, 괜찮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일자리별로 이 업무는 정규직, 이 업무는 기간제, 이 업무는 파견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심상정 위원 아니, 노동부장관이 말이야, 노동자들의 뜻을 말이야, 180도로 왜곡해 가지고 그걸 노동자 뜻이…… 노동자 뜻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뜻이다, 전경련의 입장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란 말이예요, 정확하게.

○이완영 위원 경영계가 기간제 원하지 않아요, 경영계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금 기간제법, 지금

기간제법에 여러 가지, 생명·안전 관련된 부분은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예외적으로 2년 연장을 하면서 이직수당을 주도록 해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경영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거기에 지금 일하고 있고 90% 이상 2년만 되면 떠나는 분들 입장을 고려해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상정 위원 작년에 규제 완화, 전경련의 청원서를 보여드려야 정직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쪽은 이직수당이랄지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의 요구입니다.

………

○위원장 김영주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권성동 위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독일이나 네덜란드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권성동 위원 하르츠 협약이나 바세나르 협약의 내용도 어떻게 하면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독일은 하르츠 개혁 이후에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라든가 도급 또 비정규직 등 이 비정규직 분야가 한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신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고용이나 용역이나 도급이나 상관없이 임금 격차를 대폭 축소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용역도 쓰고 도급도 쓰고 또 시간제도 쓰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독일의 기반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 9월 15일 날 이룩한 노사정 대타협은 하르츠 개혁에 비해서는 미흡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대립되어 있는, 특히 이념이 개입되어 있는 이 노사갈등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저는 아주 대단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달 말에,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국제노사정기구연합·국제노동기구 공동 컨퍼런스의 참석자들도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 사무총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한국의 대타협은 매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합의다’, 스페인 경제사회위원회 관계자도 ‘회원국이 모두 공유해야 할 매우 중대한 모범사례다’, 또 스리랑카나 도미니카공화국 대표자들은 ‘한국을 방문해서 이번 노사정 대타협을 좀 연구하고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노동부가 노동자 편이 아니고 전경련이나 이런 경제단체 편을 든다고 그랬는데 이번의 5대 입법 내용을 보면 다 대부분 노사정 대타협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입법을 한 것이고 그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보다는 노동자 편에 서서 만든 법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지적을 해 볼게요.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재 근로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현재는 68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68시간 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권성동 위원** 68시간까지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한 예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법에 52시간으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그런 관행이나 대법원, 현재의 대법원 판례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최근에 저희가 44에서 주5일근무제인 40시간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서도 현재 68시간을 전제로 해서 그 부분을 줄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을 집어넣었어요. 단계적으로 그것도 4단계로, 기업 규모별로 4단계로 해 가지고, 갑자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되는 경우에 기업도 부담이 되고 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단계적으로 축소하자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또 전반기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논의할 때도 6단계로 줄이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또 근로자들의 빠른 시행 이런 걸 감안해서 노사정 합의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당겨서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이 68시간에서, 현행 68시간, 주당 68시간을 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주로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렇지요? 대기업에서 이렇게 68시간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없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매우 드뭅니다.

○**권성동 위원** 그러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확 줄이면 되지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될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반론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금 현재 52시간을 넘는 근로자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분들 경우에는 52시간으로 갑자기 줄었을 때 급여가 한 47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월 임금이 47만 원 줄어드는 것은 감내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번 근로기준법에는 그동안 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던 26개 직종의 약 340만 근로자 중에 그중에 16개 180만 근로자가 다시 적용을 받는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초유에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감안했을 때 단계로 하는 게 근로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저도 안산 반월공단에 가서 조그마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만나서 의견 청취를 한번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근로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당 한 68시간 근무해서 280, 290만 원 받는데 만약 주당 52시간으로 감축이 된다 그러면 자기는 한 40만 원 정도의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면 임금이 500만 원, 600만 원 받는 사람의 40만 원은 얼마 안 되지만 자기 이백팔구십만 원의 40만 원은 굉장히 큰돈이다, 애들 유치원을 당장 못 보낼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급격한 감축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들은 이러한 현장 근로자들, 실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그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는 대법원 판례에서 정리가 됐는데 이걸 굳이 법제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법제화해서 앞으로의 다툼을 예방해 주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를 근간으로, 판례의 취지대로 입법을 해야, 또 판례를 가지고 이미 작년, 올해 많은 기업들이 대법원 판례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 얘기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부분은 결국은 노사정이 타협한 그 결과대로 입법이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여당 발의 법안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노사정에서 많이 고민을 해서 합의를 한 사항을 토대로 이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봅니다.

○권성동 위원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 대표는 오히려 근로자들을 더 많이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노력, 의사를 저는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관련 사항은 노사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합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입니다.

‘비정규직 실직자 규모가 결과적으로 과장됐지만 아직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 이거는 2009년 9월 14일 날 당시 이영희 장관께서 비정규직 100만 해고 대란설과 관련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당시에 통계가 한계가 있어서 예측을 정확히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이거는 작년 7월 8일 날 이기권 장관께서 인사청문회 때 하신 발언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장관께서 ‘정년 60세가 되면 앞으로 4~5년 동안 청년 40만 명이 일자리를 못 갖게 돼서 더 어려워집니다’라고, 온갖 기고문에도 지금 신고 계십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것은 여러 학회에서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한정애 위원 이 40만 일자리 부족설 역시 100만 해고 대란설하고 별로 다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께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통계자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것은 제가 국무위원이 되기 전에……

○한정애 위원 장관, 지금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대답하시는 것 막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 관련해서 몇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간제를 쓰거나 파견제를 쓰는 경우에는 비용이 더 들게 하겠다, 사업주가? 어떻게 더 들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정애 위원 자, 기간·파견제 채우는 정규직보다 더 좋게 하겠다…… 선진국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선진국의 경우는 기간제로 쓰는 그 비용 외에……

○한정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서 몇 분 ‘선진국은 이렇게 기간제, 파견제 막 많이 쓰는데 채우 좀 좋게 해서,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못 쓰게 하느냐?’…… 채우를 좋게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채우를 좋게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채우를 왜 좋게 안 해주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법상 비교 대상이 있어서 차별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차별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제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지난 13일 날 매일경제의 한 기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정규직의 열악한 상태의 근거를 든 것이 40%대에 불과한 사회보험 가입률 그리고 2.8%에 불과한 노동조합 가입률인데요. 4대 보험은 의무규정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4대 보험은 의무규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가입시키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노동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지금 두루누리 사업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을 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던 기간제라든지 파견제에 대해서는 비용이 더 들게 하겠다고 하는 말과 같이 간다라고 하면 40%대에 불과한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포함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앞으로 비정규직을 쓸 경우에 4대 보험은 노사가 양분해서 내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게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기간제를 쓰는 것에 대한, 파견자를 쓰는 것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제대로 안기는 거지요.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거기의 근본적인 것은 임금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제·파견 2년 쓰고 다른 데 가면 그 근로자들은, 이번 경황조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옮겨가니까 지속적으로 임금격차가 시급으로 보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정애 위원** 장관님, 2008년 5월 달에 이미 노동부가 발표했었던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 당시에도 그 당시 통계자료에 했었던 것, 그때도 노동부가 왜곡해서 발표했었습니다. 그때 인사노무담당자를 두고 인사노무담당자에게 물었을 때 ‘비정규직 앞으로 기간제 이게 끝나게 되면 계속 쓰겠느냐, 말겠느냐’라고 했을 때 65%가 ‘정규직 화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통계는 숨기시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런 답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 통계는 숨겼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보기에 그때 당

시에 13%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한정애 위원** 그 당시에도 그랬었고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13% 정규직전환율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2009년에 그렇게 한 번 100만 해고설로 기업들에게 일종의 시그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시그널을 준 게 아니고요, 주요 기업에……

○**한정애 위원** 이번에 또 그렇게 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됩니다.

○**한정애 위원** 장관님, 제 얘기를 좀 듣고……

냉정하게 현실 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볼게요.

2009년에 그렇게 100만 대란설을 만드시면서 한 번 시도를 하셨는데 그게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정부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그다음 2010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율이 늘어났습니다. 2010년에 20%, 2011년에 23.8%, 2012년에 27.9%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율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한 번 시도했는데 이제 안 되는구나. 이제 비정규직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써야 된다’라고 해서 어쩔든 많이 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박근혜정부 들어서 다시 또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4년설이 나오잖아요, 4년설이. 4년을 쓰게 하겠다고 하는 것, 파견은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2013년의 25.6%에서 2014년에 20.6%, 5%씩 줄고 있지요? 지금 장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2015년에 이제 15.1%라는 거예요. 정부가 뭐 한 겁니까?

노동시장을 가장 더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예측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노도 아니고 사도 아닙니다, 정부예요.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대는데 어느 기업이……

그리고 지금 임금체계를 말씀하시는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임금체계, 연공급제 그것 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혈기왕성한 젊은 인력 데려다가 그 노동력·생산성에 맞지 않는 저임금을 줬지요? 그 대신에 나이 들어가면서 연공급제에 의해서 조금 더 생산성이 떨어질 때 그 임금을 받게 한 구조 그것 그냥 정부에서 용인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나이 들어서 많이 받고 있는 임금이 문제다…… 그렇다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 뽑아다가 제대로 된 임금평가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십니까?

저는 정부가 이렇게 노동시장을 흔들어서 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대기업은 노동시간 52시간 넘는 기업 거의 없다면서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드물다고 했습니다.

○**한정애 위원** 드물다, 그러면 52시간으로 바로 실시하면 되지요, 대기업부터, 첫 입사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80%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대기업부터 바로 하면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적용 안 되는 180명을 다시 적용한다고요.

○**한정애 위원** 첫 입사부터 바로 노동시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2시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다 플러스 8시간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대기업에서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 더 일어납니까, 오히려 8시간을 더 할 수 있는데? 이 노동시장을 이런 식으로 정부가 물을 흐리면 안 됩니다,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앞으로 과도, 일몰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한정애 위원**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해고 대란설 관련해서 제가 청문회 때도 답을 했듯이……

○**한정애 위원** 그것 이미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때 당시에도 13% 정도였고 지금도 정규직전환율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그때 통계를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은 소위 기간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 비용을 그때는 추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55세 비중이 얼마라든지 또 사업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

는지 또 전문직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통계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릴 때도 이 부분에 한계가 있다라는 말을 분명히 드렸고, 그 뒤로도 최소한 60% 이상은 기간이 만료되면 다 본인 일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멀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임금체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모든 연구기관들이 이제는 임금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계 각국에 일하는 사람 간의 불공정성 문제가 너무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큼 같은 일을 하면서 격차가 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소위 단기간 1~2년간 채용하면 임금이 30년 된 우리 근로자에 비해서 아주 낮기 때문에 1~2년 기간제를 쓰려는, 파견을 쓰려는 요인이 줄어든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위해서도 또 일하는 사람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임금체계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임금체계가 바뀐다는 얘기는 낮은 쪽은 올라가고 또 높은 쪽은 좀 자제하고 이런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1분만 주십시오.

.....
○**위원장 김영주** 한정애 위원님 조금 더 하시겠어요? 1분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 통계 자료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100만 대란설 때, 2009년에 그렇게 흔들고 난 뒤에 그것이 무위로 돌아가고 난 뒤 그 이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율은 올라갔었다, 정확하게 공식화되어 있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낮은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서 계속적으로 4년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장관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사내도급이 급여가 낮다. 오히려 파견이나 기간제가 급여가 좀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비슷한 직종의 경우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원청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 현황 내놓으라고 할 때 자료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료가 없다는데 어떻게 거기에 근거해서 파견과 기간제가 높다라는 말씀을 그냥 막 하실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사실 장관님 이렇게 말씀 막 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는 기간제·파견 근로자들의 경우는 다른 어떤 논리보다도 그분들 입장에서 일자리의 안정과 그다음에 처우개선을 목표로 두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2년에서 4년 기간제 예외적으로 인정한 부분도 청년의 경우는 제한을 하고, 35세에서 55세 정규직 비율은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수가……

○**한정애 위원** 35세도 청년입니다, 장관님!

○**위원장 김영주** 자, 한정애 위원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90% 이상이 일자리를……

○**위원장 김영주** 자,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잃어야 된다는 걸 감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앞서 장관님께서 제가 답변하시는 것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질의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 이번의 마무리 1분은 한정애 위원님 본인 얘기만 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다음, 이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제 위원** 파리 테러를 보도하면서 신문에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쓰였습니다. 20세기는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세기인데 21세기에 전쟁이 없어지나 싶었더니 테러로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21세기는 경제전쟁 시대지요? 장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일자리 전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성장률을 높이고 또 불경기를 극복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업을 줄이고 이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이 하나만 설명하면 일본이 양적 완화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우리나라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어요. 올해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일본은 대학졸업생들 90%가 취업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알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인제 위원** 우리나라는 50%대입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라는 폭격 때문에 한국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고요,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번의 노사정 대타협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려 낼 수 있느냐, 선결조건이 노동시장의 선진화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아주 놀라운 합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인제 위원** 그러나 우리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듣고 있고 또 반대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번의 우리 노동개혁 입법은 아주 실용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규범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범을 고치겠다 이렇게 접근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인제 위원** 무슨 큰 철학적인, 이념적인 이런 명분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고 아주 불확실한 것, 그래서 불확실 때문에 노사 모두 고통받고 있는 것을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주자, 또 당장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휴일 근로시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년이 60세까지 강제적으로 연장되면서 임금시장의 유연성을 만들어 내야 청년고용도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 시장에 대한 규범을 개정하는 것이 2개 법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노사정위원회에서 타협이 안 됐는데 왜 냈느냐’ 이렇게 질책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합의내용을 자세하게 읽어 보면 그동안 정부가 준비한 비정규직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때 합의 발표할 때는 완전히 합의가 안 됐지만 그 이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하면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이렇게 합의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렇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한 것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고요.

아까 장관님 답변 가운데 ‘완전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토론의 결과를 아마 국회에 제출하면 우리가 입법할 때 최대한 그 정신을 반영해서 비정규직 시장에 관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인제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직은 무조건 선이고 비정규직은 무조건 악이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시각이고요. 정규직으로 쓰는 게 맞는데 이게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 그것은 맞지 않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동원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악으로 봐야 될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입니다. 그렇지요,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인제 위원** 불합리한 격차입니다. 우리나라 아주 심해요, 이게. 그리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인제 위원** 입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사회·경제 정책상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노동개혁 입법 이게 성공적으로 안 되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 안 되면 이게 표류하게 되고 사실상 물 건너가는데 그렇게 되면 수백 가지 노사정 대타협 합의 내용들도 힘을 잃게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인제 위원** 큰 문제입니다.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시장 세밀하게 들어가면 아주 작은 것만 손을 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든지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리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아닌데 걱정들을 많이 하

셔서 제가 외국 입법례, 선진국 입법례를 좀 소개를 해 보려고 그러합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하십시오.

○**이인제 위원** 기간제, 독일은 2년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2년인데 신규 설립 기업은 4년까지 허용하고 또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유연화했습니다. 이게 아마 하르츠 개혁에서 완화된 것 같아요.

일본은 5년입니다, 5년. 그리고 영국은 4년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전환하지 않아도 되고 무슨 처벌 규정도 없다고 그래요.

미국은 아예 없습니다, 제한이.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다음에 파견시장에 대한 규제 외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는 32개 품목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일절 불허합니다. 말하자면 네거티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포지티브……

○**이인제 위원** 포지티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다가 생명, 안전에 관해서는 아주 제한해 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새로 개정안에 더 제한을 엄격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부 더 허용하는 것은 사실은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근로자들의 앞길을 막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것입니다.

장관, 확신하시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취업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이인제 위원**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김영주**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독일이 얼마나 사회주의 가치가 충만한 사회입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영리 목적, 건설업 이런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허용합니다. 파견기간도 제한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1년, 1년, 2년밖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몇 개 업종만 제한하고 나머지 다 허용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은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용기간도 없고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더 매력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서 국내 기업이나 또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도 없고 일자리 만들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익도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매년 50만 명 안팎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려나오는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면 보다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영주 장관님, 답변하실 내용 간단하게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인제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파견제도 한 가지만 말씀 올리면 최초로 이 파견법을 만들 때, 2004~2005년도에 보완을 할 때 정부가 그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선진국의 흐름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당시에 법을 낼 때도 소위 일부 업종만 제한하고 모두 푸는 네거티브 방식을 정부가 안으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할 기회를 확대해 주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정부는 저는 좀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최근 고용부가 매우 편파적이거나 혹은 위상, 도를 넘었다라는 의혹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야당 의원들은 2012년, 2013년에 이미 근로시간 단축법을 비롯해서 비정규 관련법 등등 통상임금법에 이르기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을 정부가 반대를 했어요, 여당의 반대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3년 이상 이 문제를 논의를 해 왔습니다. 논의를 해 오면서 단 한 번도 그게 진영논리다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정쟁의 대상으로 삼느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삼갔어요.

그런데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법안이 상정이 되는 판에, 아니 어제 인터뷰에서 ‘진영논리를 벗어나야 된다’라든가 ‘정쟁의 대상으로 삼

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매우 편파적이거나 과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한 것은 노사정 대타협 이후에 다행히 하반기 들어서 기업들의 청년 채용 계획이 확장되고 있고……

○은수미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답을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 그래서 제가 5대 입법이 반드시……

○은수미 위원 매우 편파적이고 과도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3년 동안 논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했을 때조차도 그런 정부의 논리를 정쟁의 대상이라든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은수미 위원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거기에는 5대 입법이 금년……

○은수미 위원 그런데 이런 인터뷰를 하셨길래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만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금년 안에 5대 입법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드렸고, 거기에 제가 진영논리라 함은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기간을 늘리면……

○은수미 위원 아니, 저는 그 배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부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왜 진영논리라고 하고 정쟁의 대상이라고 낙인을 찍느냐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정부가 기간제도 늘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오케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는 마당에 어디서 진영논리라고 하고 정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까?

심지어는 정부가 그동안 그렇게 반대를 해 왔을 때조차도 야당 의원들은 3년간 참아오면서 그런 얘기는 삼갔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입장을 존중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진영논리를 벗어나야 한다라든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말씀을 한다면 우리 야당 의원들은 그것은 국회 입법 논의를 봉

왜하려고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은수미 위원** 혹은 방해하는 것이라라고 의혹을 가질 수 있으니 자제하시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하여튼 저는 빨리 정기국회 안에 이게 입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알겠는데 과도한 말씀을 하시지 말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다른 사유로 이게 지연되거나……

○**은수미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과를 받아야 되겠으나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막말이에요.

그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정부가 입법 촉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수미 위원** 정쟁의 대상이나 진영논리나 하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고용부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니, 당신 왜 진영논리예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빨리 정기국회 안에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수미 위원** 제발 좀 조심해 주십시오. 예의를 지켜 주세요.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청년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합심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재벌·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를 한다든가 혹은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까지도 지자체장들이 하시려고 합니다. 이게 정치적 행위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는 청년배당이나 청년수당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에서도 일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공공의 고용서비스를 전제로……

○**은수미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게 중복이라고 정부가 해석할 수는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자체가, 여력 있는 지자체가 지금 특단의 대처를 해야 될 때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을 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해석의 차이는 있어요. 이게 정치적 행위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정치적 행위라고 한 적 있습니까?

○**은수미 위원** 대답을 해 보시라고요. 정치적 행위는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의도는 저희는 직접 듣지 못해서 알 수 없으나 분명히 두 가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수미 위원** 그 문제를 물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잖아요.

○**은수미 위원** 제가 문제를 물어보지 않았습시다.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을 해 주세요.

제 입장을 밝혔어요.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 입장 다른 것은 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실 필요가 없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중복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의 고용서비스를 토대로 해야 한다……

○**은수미 위원** 정치적 행위냐 아니냐에 대해서만 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그렇게 독일에 대해서 하시려면, 독일이 이번에 최저임금법 통과시킨 것은 아시지요?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각국들이 다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독일이 드물게 최저임금법, 모르시는군요? 독일이 언제 통과시켰습니까, 최저임금법을?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것으로 하고요.

독일의 최저임금법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하청이나 재하청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원청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최고 50만 유로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압니까? 6억 2000이예요.

왜 그런 것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그것도 모르세요? 최저임금법 그런 것 통과시켰다는 것?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리도 원청과 하청, 협력업체의 최저임금 미준수가 원청에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원청은 원인이 아니라 하청이나 재하청에서 최저임금을 안 내면 최고 50만 유로,

6억 2000만 원을 내야 된다고요. 그런 것이라도 좀 검토를 하시면서 균형 있게 살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독일의 경우도 원청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균형 있게 살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균형 있게, 법은 언제나 균형이 필요하고요.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거기다 제가 균형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민주노총이 파업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3일 날 이기권 장관께서 ‘정치파업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사전에 어떻게 예단을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업이란 사용주가 처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은수미 위원** 아니, 지금 보십시오, 이게 파업인지 아닌지.

정부가 지금까지 파업을 불법이라고 예단해 놓고 뒤집힌 사례가 한두 건이어야지요. MBC 파업도 정부는 불법이라 해 냈지만 뒤집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균형 감각을 갖고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함부로 진영논리니 불법파업이니 혹은 정쟁의 대상이니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하면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정부입니까?

그러니까 요즘 인터넷상에서 이놈의 정부가 네 오콘이다, 극우 보수정권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심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의 취지는 알겠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발표를 했던 취지는 집회 유예도 민주노총에서 입법을 반대하면서 두 차례 파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위법일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완영 위원** 시간 좀 지킵시다.

○**은수미 위원** 고용부장관이 저렇게 길게 쓰시잖아요. 제가 응답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 저도 말씀을 드려야지요.

○**이완영 위원** 답하지 마세요, 장관님. 답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영주** 은수미 위원님 1분 더 드릴 테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게 민주사회예요. 그리고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국회에서, 노사정에서 논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상호에 대한 예의나, 행정부면 입법부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부면 행정부하고 사법부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호소를 드렸지 않습니까?

○**은수미 위원**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 노동권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됩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것을 길게 쟁점을 삼자고 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에 야당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면 위원님은……

○**은수미 위원** 아, 지금 제가 응답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왜 답변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것도 문제예요.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좀 객관성을 지키십시오. 진영논리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에게 질문을 주시기 때문에……

○**은수미 위원** 아니, 제가 저의 의견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력하는 거예요, 1분간.

진영논리니 정쟁의 대상이니 불법이니 이런 식으로 미리 예단을 하지 마시고 국회를 믿고 국회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부는 좀 처신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주** 지금 마무리 1분에 은수미 위원이 질의하지 않았으니까 장관님께서도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양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영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 거듭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은 기본적으로 현행 2년

을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정규직 전환율을 보니까 15세에서 34세까지는 20.2%고 35세에서 54세 근로자는 9.2%인데 현실적으로 35세 이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이나 또는 구직이 어렵기 때문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이 완화되면 같은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외부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기간제 및 구직자 당사자의 80% 이상이 정부 제안에 찬성을 하고 있던데, 또 현장에서는 연령이 높아서 비정규 일자리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좋다는 의견부터 또 2년이라는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본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보여 주기 부족하고 또 조직에서의 소속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8~9개월부터는 이직 걱정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기간 연장이 기간제 근로자와 기업 모두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마땅하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기간제 사용 제한 기간 연장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고용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청년들의 경우에는 처음에 채용할 때 인턴이라는 개념으로 채용해서 인턴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요소가 있어서 거기가 전체적으로 좀 높고 35세 이상은 이미 일자리들이 고정화돼서 기간제나 파견으로 간 분들의 정규직 전환율이 한 자리 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직을 하기 때문에 2년마다 바뀌어 가면 첫째, 고용불안이 있고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분들 급여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여 처우를 올리기 위해서도 조금 더 장기간 근속하는 게 옳다, 그것은 또 본인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본인들의 애절함을 토대로 해서 예외적으로 본인 희망 시에 2년에서 4년으로 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4년까지 연장을 한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하면 페널티 성격으로 이직수당으로서 10% 임금을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5개 법안 중에 한 가지만 더 질

의하겠습니다.

5개의 법안 내용 중에 일부는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부분 노사정 대타협 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노동개혁은 정규직 비정규직 부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또 법률 개정, 행정지침 마련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간 발표된 정부 입장이나 또 각계의 의견 등을 우선 개정안에 반영하면서 노사정이 집중 논의하여 대안이 표출되면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일근로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는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이라는 합의정신 위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휴일과 연장근로를 합해서 현재 68시간으로 돼 있는 걸 52시간으로 줄이되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4년입니다. 최종 시행에서 4년이나 지금부터 한 8년 될 겁니다. 특별휴일 8시간을 인정하자라고 하면서 그때 수당 문제는 국회에 가서 정리하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의 위반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 우리의 가산율이 세계 최고로 높습니다. 그리고 가산율을 더 높였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는 평일 연장은 25%, 휴일은 연장이든 일과시간에 하든 35%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다가 또 유급 휴일도 있고 그래서 현재의 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 때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노사가 얼마나 협력해서 그 축소 폭을 줄여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구직급여 지급요건을 강화하고 또 하한액은 하향 조정으로 해서 청년 알바생 또 단기계약 근로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시간 계약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고령자·전문직 파견 확대는 추후 논의 과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뿌리산업 파견 허용은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까지 파견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장관께서 입장을 같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실업급여를 1개월씩 더 드리는 걸로 하고 평균임금 50%를 60%로 올리면서 소위 지급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들도 지급요건은 강화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장 지급요건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급요건을 강화하고 있고 그것은 노사정 합의할 때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재취업 강화 등 제도 효율화로 포괄적으로 표현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풀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급자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소위 아르바이트나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제한돼서 못 받는다면 그 잔여기간을 저희들이 다른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등의 적극적인 고용조치를 통해서 어려운 계층들이 실업급여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견의 확대 문제도 실제 55세, 자기 1차 직업에서 퇴직한 후에 본인의 능력을, 임금수준을 비슷하게 받으면서 찾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금융권에서 퇴직을 했는데 중소기업의 100인 되는 회사에서 금융전문가를 1명 채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견 회사 소속으로 해서 월요일 날은 A회사, 화요일은 B회사, 수요일은 C회사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분의 근로조건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갈 수 있다 이게 전문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직·고령자 이분들에게 확대를 하면서 또 뿌리산업의 경우는 뿌리산업 업무 자체가 어느 해에는 굉장히 호황이었다가 어느 해에는 굉장히 불황으로 낮낮이가 심해서 지금도 6개월 파견을 쓰는 데 또 도급을 쓰는 데 불과 문제도 있어서 합법적으로 허용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이런 부분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양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오전에 위원님들이 첫 번째 질의를 모두 하지 못하셨으나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나머지는 오후 3시에 다시 개회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고용노동부장관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오전의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하신 5대 입법은 정치적 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서 오전에도 우리 환노위 위원들한테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우리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자제를 하고 정부가 내놓은 안을 환노위에서 상정해서, 정말 소위에 상정을 시켜서 우리가 최대한 같이……

우리가 현재 잘못돼 있는 근로시간 단축은 바로잡아야 되고 노사정에서 합의 안 한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해야 되고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께서 시장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해 주시고 조금 노동계나 자극하는 발언은……

저도 오늘 우리 위원들이 갖고 온,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지만 가급적이면 장관님께서 여야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시고 또 현장 얘기를 전달하시고 법안소위 들어가면 정부가 들어와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충안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잘해 나가는지 모든 국민들이 살펴보고 있다는 걸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3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이기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우원식 위원 아까 아침에 은수미 위원과 제가 얘기했던 그것에 대해서 해명할 게 있으면 한번 해명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진영논리라고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입법을 할 때 비정규직 기간을 짧게 하거나 사유 제한을 하게 되면 그게 노동계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간을 넓혀

가면……

○**우원식 위원** 아니, 5대 입법에 대해서 ‘진영논리에 빠지지 말고, 정치적 논리에 빠지지 말고 빨리 통과시켜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그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이 5대 입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진영논리에 빠져 있다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제가 진영논리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제한을 넓게 하면 경영계를 도와주고 기간 제한을 짧게 하면 근로자를 도와준다는, 노사단체의 입장이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서, 실제 비정규직 입장에서 보면 기간을 넓게 해 달라 또 기간을 현재……

○**우원식 위원** 그러면 정치적인 접근은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 5대 입법이 다른 것 때문에 논의가 지연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해 주십사 하고 호소를 드린 겁니다.

○**우원식 위원** 하여튼 말을 이상하게 만드시는 데, 5대 입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통과시키지 않으면 진영논리에 빠지고 정치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됩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 저는 진영논리에 빠진 사람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그러니까 상정을 해서 빨리 논의를 해서 저희들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금년 안에 5대 입법이 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이 되어서 내년에 여러 가지, 청년들이 제대로 채용되게 하자는 취지……

○**우원식 위원** 그거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런 취지를 제가 호소하는 거지요.

○**우원식 위원**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점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저는 그런 취지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우원식 위원** 장관, 그렇게 하면요, 정말 노동자를 위하고 사회를 통합하겠다는 생각을 이만큼도 갖고 있지 않으시는 건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원식 위원** 지난 노사정 합의안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새누리당이 5대 법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이완영 위원님께서 ‘합의가 안 되면 공익위원안으로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합의할 수 있었던 쟁점은 노사정 합의처럼 하고, 그렇게 되니까 합의되지도 않은 것을 다 올려서 합의되지 않으면 합의되지 않은 대로 그냥 밀고 가겠다 이런 얘가지요, 그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 입법을 제출할 때…… 저희가 논의할 때도 이게 원래는 4월 말까지……

○**우원식 위원** 아니, 기간제 연장 그리고 파견 확대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로 하기로 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요. 그때 4월 달에 합의할 때 이거는 8월 말까지 다 논의해서 마무리 한다라고 합의를 했었는데 다른 문제 때문에 전체 합의가 안 돼서 8월 말이 지나서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거는 그러면 정기국회까지 의결을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공감대를 이루어서……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무 협의를 하기로 해 놓고 합의되지 않은 거를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제출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합의 안 되더라도 공익위원안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번에 내놓은 소위 5대 노동계약 법안은 노사정 합의를 거치지 않은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충분히 논의할 만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논의는 했지 합의된 것은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왜냐하면 금년 1월부터 4월 사이에서도 무려 넉 달 동안 논의를 했고 또 그 전에도……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사정 합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대국민 사기극 벌인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그거는 분

명히 그때도 그런 취지로 했고……

○**우원식 위원** 일부 합의된 것 가지고 합의를 국민적으로 막 선전을 해 대고, 그러면서 합의되지 않은 핵심 쟁점들은 마치 국민들한테 합의된 것처럼 그냥 밀고 나가 버리는 그런 잔수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노사정 합의 사항에, 법이 제출돼 있어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된 사항은 정기국회의 의결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 지금 중요한 내용인 기간제 연장, 파견 확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우원식 위원** 기간제 연장은 지난번에도 장관께서 실무자로 있을 때 이거 연장 안 해 주면 100만 대란 일어난다고까지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늘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장관을 전경련의 침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70% 이상이 기간이 만료되면 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위원** 아니, 장관께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연장되지 않으면 100만 대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합의되지 않은 것들을 그냥 막 무가내로 올리고 법이 있어야 논의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합의된 것만 강조하고, 이거는 국민적으로 정말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하는 게 파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을 키워 가는 데 있어서 고용의 유연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완영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유연성이라는 말을 경영계에서 많이 주장을 했지만 저는 유연성 차원에서 접근 안 했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완영 위원이 그렇게 질문할 때 그걸 그렇다는 투로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저기.

(영상자료를 보며)

1년 미만 단기 근속자가 OECD 평균이 16.5%

인데 우리나라는 35.5%예요. 한 회사에서 장기 근속하는 사람이 OECD 평균이 36.4%인데 우리나라가 18.1%예요.

저 얘기는 뭐냐 하면 1년 미만 일하다가 쫓겨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 10년 이상 일하는 게 가장 적은 나라, 고용의 유연성으로 보면 지나치게 고용이 유연해져서 노동자들의 권리까지 훼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노동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무슨 파견 확대하는 법을 내고 기간을 연장시키고, 어떻게 이런 법들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노동부장관이 노동자를 위한 장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하신 대로 파견 근로자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 보면 파견 근로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파견 기간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고민하는 게……

○**우원식 위원** 파견 이런 문제는요,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훨씬 열심히 일해요. 그런 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고용노동부 안 찾아가고, 고용노동부 찾아갔더니 ‘옛날에는 원래 노예 같은 신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을지로 위원회에 와서 하소연해요.

1분만 더 주십시오.

.....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하면 월급은 더 주고 뭐 그런 제도를 만든다고요? 지금 있는 비정규직들한테 월급을 좀 더 주세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들 시중노임단가 제발 적용해 달라고 해도, 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정부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 안 하잖아요.

지금 있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입의 침이라도 마르는 거지요. 입의 침도 안 말랐는데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만 명 정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우원식 위원** 제발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그래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비중이 20%에서 18%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간제의 경우도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한민국의 전체 비교 통계를 보면 기간제나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이……

○**우원식 위원** 통계에서 빼 버린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면 훨씬 더 늘어났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짧아지기 때문에 줄어들잖아요. 그 차이가 줄어들……

○**우원식 위원** 통계에서 빼 버린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면 훨씬 늘어났다고요. 학교 비정규직은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학교 비정규직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우원식 위원** 몇 명으로 잡혀 있습니까, 학교 비정규직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전체 포함해서 2%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우원식 위원** 현실을 정확하게 아세요. 지금 학교 비정규직만 해도 40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입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는 중이고 질의하시는 중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위원님들 과반수 의견이 필요한 126항과 127항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6항과 제127항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법안소위로 회부하지 않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인 한국건설안전공단법안은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한국건설안전공단’으로 명칭을 전환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건설 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명칭, 사업 영역에 있어서 중복의 우려가 있어 일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학습 병행 훈련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습근로자의 학습권과 근로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영 위원님!

○**이인영 위원** 한국건설안전공단 법안과 관련해서요. 우리 산업안전공단의 내용에서, 말하자면 건설 관련한 부분들은 빠지게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정적이다, 반대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내용과 저쪽에서의 어떤 평생교육 내용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대로 우리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구를 좀 더 분명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한테 위임을 해 주는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의견서에 대한 채택을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지금 이인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대로 양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126항 한국건설안전공단 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 제127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자스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스민 위원** 장관님, 오전부터 계속되는 질의에 이미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장관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에 대한 확인 질문만 하고요, 아까 말씀

하신 내용이었으면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안 상세 내용부터 합의 과정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받았었고 노사정 합의에 위반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 존경하는 이인제 위원님께서서는 많이 설명을 하셨지만 상당 부분이 그동안 노사정 합의사항을 법률에 반영한 것이고, 그리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정 간 대안이 마련되면 소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큰 법률적 구조는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법을 입법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은 일부분은 보완해서 제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합의 위반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합의 정신에 기본하고 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러면 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관련해서 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를 들자면 특히 행정해석하고 판례에 대한 상이에 대해서 제도 불확실성과 노사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관련해서 시급히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급히 입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현재 이번에 입법이 통과되지 않고 판결이 나오게 되면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나오든 간에 그 상대방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동의할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여야 대표께서 강조했듯이 우리나라가 최장의 근로시간을 하고 있고,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저녁이 있는 삶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판결전에 합의해서 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이번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근로시간 단축인데, 하지만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해서 특별연장근로를 일정부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근로시간 단축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특별연장근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규모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가장 낮은 것으로 해서 한 15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즉시 하느냐, 단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일자리가 늘어나는, 몇 년도에 더 많이 늘어나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총량으로 보면 저는 늘어나는 속도는, 총량은 같다고 보고 있고, 다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노사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 그래서 노사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리고 이 법안 내용에 보면 비정규직 사용기간 예외적 연장 허용,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 규제완화 방안이 다수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같은데, 특히 기간제 사용제한기간 연장 시 비정규직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 고용불안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제한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고 기간 연장은 35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따라서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는 그런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 기간제 파견법 관련해서 그 법이 제정된 이후로 OECD 국가 등에서 저희들 개별 관련 규제법에 굉장히 우리가 강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게 우리 노동시장 전체에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그 법을 보급한 이후로 중간 일자리들이 도급이나 용역으로 많이, 풍선효과처럼 나쁜 쪽으로 가고 있어서 도급이나 용역에 있는 근로자들을 가급적이면 중간 일자리로 오게 하고 또 일하는 동안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정규직 노동시장의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게 되면 그게 공정성과 투

명성,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굳이 비정규직을 쓰려는 유인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간 제한과 정규직 부분이 동시에 간다면 저는 절대 비정규직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구직급여 지원기간과 수준은 확대되었지만 지급요건이 강화되어서 전체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졌다고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근로자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따라서 보장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이번 개정안 내용은 자칫 보장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입장은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현행대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두 가지,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다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급요건이 일정부분 강화되는 부분은 만약에 이제까지 6개월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았다라면 그 지급요건이 9개월로 된다면 그중 상당 근로자들은 9개월 일하고 받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근로자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고용서비스를 충분히 해서 일의 단절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이자스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사스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 장하나입니다.

장관님, 오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이인제 위원님께서 각국의 기간제라든가 파견제 제도를 비교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답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견이나 기간제에 제한사유가 별로 없다, 오히려 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많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완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셨고

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기업이라든가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장관님이 수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도 부분에만 동의하신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파견 규제를 기간 제한과 차별금지라는 2개 장치를 하고, 그것이 정규직으로 시장에 작동하게 되면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도급이나 용역으로 다수가 흘러가 버려서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해 주는 차원에서 선진국……

○**장하나 위원** 방지책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한번……

○**장하나 위원** OECD 가입국들의 여러 가지 노동지표들을 우리가 비교한 데이터들을 장관님도 유심히 늘 보시지요, 올라올 때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그러면 독일이나 영국, 미국 같은 나라들이 그렇게 기간제나 파견제에 대한민국같이 복잡한 규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임시직은 우리나라만큼 많은가 아니면 더 있는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OECD 국가 중에 임시직 비율이 대한민국이 2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가 없는 국가들도 대한민국보다 임시직 숫자는 훨씬 적은 것이지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규제가 없다면 임시직이 더 많아질 텐데, 해서 봤더니 가장 큰 것은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이 원칙이 많이 준수되기 때문에 기간제, 파견제 같은 비정규직 사용이 기업들에게 있어서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더라란 말이지요. 그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저희 이번 입법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노동시장의 규율과 같이 비정규직을 같이 해서 일한 만큼 보상받게 하게 되면 비정규직 사용 유인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장관님, 그렇다면 앞서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및 처우가 많이 안 좋은 것은 아닐 텐데, 그런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우리 노

동부가 너무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도 더 열심히 감독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장하나 위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번 노동개혁을 통해서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법 개정이다 또는 제도개선이다 얘기를 해도 불신감이 쌓여 있는 데는 노동부도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 부인하기는 어려우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격차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해서 노동위원회 판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장하나 위원** 장관님, 제가 장관님 답변 들을 기회를 나중에 미루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뒤로 저희들이 노동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부터 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독일의 경우에 최저임금이 올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 질문을 들어서야 답변하기 좋으실 거예요. 이제는 질문 답변을 차례차례 번갈아 가면서 하고요.

독일의 경우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 돈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8.5유로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면 한 1만 5000원 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각국을 다 모르겠습니다. 아마는 1인당 국민소득……

저희가 절대액은 중국보다 약간 아래고, 그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해 보면 중간 위고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영국은 1만 3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다음에 각 국가별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자유롭게 하시는데 그러면 질의가 엉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김영주** 장관님! 장하나 위원 질의 들

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수준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수준을 답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냥 제가 독일이나 영국이 얼마나냐고 질문드렸지 수준이 얼마인지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요구드린 적이 없어요, 장관님. 나중에 속기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대표적인 수치를 한번 여쭙어 볼게요.

OECD 30개 국가 중에 GDP 대비 공적 사회복지 지출 비중,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세금을 얼마쯤 사회복지 안전망에 사용하는지 이것은 우리나라 순위가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적극적 고용 조치,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아가는 데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약해서 매년 높여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답은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 주셔도 좋은데요. 25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아주 최하위인 국가예요.

예컨대 아까 독일도 말씀이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독일이 대학 수업료가 거의 없지요. 한국의 경우 아주 비싼 수업료를 70% 이상 되는 청년들이 쓰고 있고 그 부담이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 학부모인 노동자들도 다 부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이 천차만별인 유럽 국가들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도 이렇게 큰 노동개혁을 논할 때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 대통령께서 1월 12일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도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대타협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렇지요? 노동 관련된 이런 말씀은 장관님께서 특히나 유심히 관심을 가지시고 내용도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대통령께서 인용하신 네덜란드의 1980년대 바세나르 협약, 맞지요? 이 협약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당시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노동자도 고통 분담을 하고 시간제—시간제 정규직이라고 부르더라고요—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저는 참 의아
해요.

시간제 일자리를 갖게 되면 바로 처우가 불안
해지고 이게 자기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시간제
노동자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
겠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도 낮고 매년 우리 정부
도 관련 예산이 불용되고 있고, 우리가 같이 보
던 내용이고요.

또 하나 덴마크 경우도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사용자에게 해고
의 자유를 주는 대신—대통령님이나 정부에서 말
하는 공정해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해고
후에 4년간, 무려 4년간 정부가 기존 급여의 7
0~90%를 노동자들에게 줬습니다.

4년간 월급의 70~90%의 급여를 주고 그동안
해고된 노동자들은 재취업의 시기를 가졌고요,
가정은 파탄 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가능했
던 게 이 대타협인데, 저는 정부와 사용자가 무엇
을 얼마큼 고통분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에 노사정 대타협 얘기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이
런 대타협의 정신은 많이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고 너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
가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노동 유연 안정성이 유연화와 안정성
이 결합된 말인데 유연화라는 것, 내 고용이 불
안한 것에 대한 비용을 훨씬 더 불안에 대한
비용까지 임금에 반영되어서 그만큼의 비용
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유연화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노동자
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정규직으로 겪었던 고통을 생각해 보면 이번
노동개혁에서도 그러한 기대는 어려울 것 같
고요, 정부의 얘기들이 이미 너무 신뢰가 땅
으로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위원님 말씀하
신 것 중에 간략하게 답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파견을 2000년대 중반에 규
제를 한 뒤에 OECD에서 그 부분이 너무 강
하다는 지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문제는 강한 규제에 의해서 시장이 좋은
쪽으로 작동하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
는데 풍선효

과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실례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사유 제한으로
기간제 파견에서 유일하게 OECD 국가 중
에서 가장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프
랑스의 청년들 지금 일자리 찾아간 것
을 보면 소위 정규직 일자리는 16%에
불과하고 84%가 임시일용직을 하고
있어서 프랑스가 노동개혁을 하고 있
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덴마크나 네덜
란드는 강소국입니다. 거기는 소위 파
타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를 거의 30%, 40%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거기는 계약의 자유를 당
사자한테 주면서 정부가 강한, 실
업급여를 장기간 주면서 해소를 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우리도 그 문
제, 소위 네덜란드 덴마크 모델이
우리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한가를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거기는 소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
분이 가능하고 우리는 벌써 인구 5000
만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은 적절치
않다라고 학계에서도 얘기가 나왔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장하나 위원** 그렇다면 장관님께서 대통령
이 그런 얘기를 계속 인용하시는 것
을 막든지 수정을 하셔야지요. 지금
장관님께서 인용하시면 어떻게 합
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금 제가 네
덜란드하고 덴마크 모델을 인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장하나 위원** 아니,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그런 약속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문한 거 아
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한 번도
5대 입법을 하면서 유연성 차원에서
5대 입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장하나 위원** 아, 그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시고 대통령 말씀 자
료를 고치라고 청와대에 말씀
하세요!

이상으로 좀 듣기 싫습니다, 저는.
동문서답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정
규직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예
측가능성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대통령한테……
.....

○**위원장 김영주** 장관님, 장하나 위원님 질의 끝나셨기 때문에 이제 답변은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노동법 때문에 환경부장관님 좀 심심하시겠습니까.

고용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바세나르 협약 하고 난 뒤에 네덜란드에서 입법한 사항이 몇 건쯤 됩니까, 바세나르 협약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바세나르 협약이 정부하고 협약하기 전에 노사 간에 기업에서 해 오던 것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지금 우리 노사정 합의도 실지는 65개 사항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최봉홍 위원** 65개 사항을 협의를 해 가지고 입법이 필요한 것 다섯 군데를 입법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아직 안 돼 있고 한데, 지금 기간제·과건제 문제 합의가 안 되고 있었는데 오늘 결렬됐지요?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노사정 간 각자 의견을 병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정리 안 돼 있는데, 안 그래도 지난번에 국정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습시다만 이것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정리가 될 수 있었는데, 전혀 안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진영논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입법할 때 기간을 짧게 하면 근로자를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길게 하면 사용자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본인들은 기간을 늘려 달라, 그리고 기간을 2년에서 예외적으로 4년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그게 기간을 늘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기간을 아예 폐지하려는 의미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기간을 늘려 달라는 것이 당사자들의 절실한 요구인데……

○**최봉홍 위원** 현재 상황으로 봐 가지고 민주노총은 완전히 손 안 대고 있고 한국노총도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볼 때는 소수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도 장관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각 지방 감독과장님, 청장님을 총동원해 가지고 노동조합을 설득을 더 해 보라고 했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특히 저희들이 정규직·비정규직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입법적, 경제법의 보완이랄지 또 소위 상생지수 변화도 있으면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하여튼 이번에 소위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으로 마지막 협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다음, 구직수급 요건을 강화했는데 외국보다 우리가 좀 약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수급 요건이 우리 노동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 선원들 그리고 건설근로자들은 거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예외 조항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싶은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6개월에서 9개월로 하면서 산업 범위도 넓혔습니다. 지금 18개월 중에 여섯 번 돼 있느냐 했던 것을 24개월로 넓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달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근로실태가 어선원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다 6개월 이내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법안 협상 과정에서 부대조건을 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쟁점 노사정 및 전문가그룹 의견이 11월 16일 날 왔는데 거기에 보면 노조 차별시정권에 대해 가지고 경총은 반대를 하고 있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 정부가 노동계 의견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이것만 물어봅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차별을 시정한다는 차원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본인의 취지와 반하거나 지나치게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면 오히려 또 부작용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그에 관련된 법안도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봉홍 위원** 경충하고도 계속해서 교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및 근로자 임금 감소에 대해 가지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할증률보다는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주5일근무제, 44에서 40으로 줄일 때 그 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대안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부와 함께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옛날에 68시간으로 단축할 때는 임금대책을 따로 안 세우고 그대로 적용해 왔던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때는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노력 조항을 넣었는데……

○**최봉홍 위원** 지금도 그 노력 조항 사용할 수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여러 가지 사안 중의 하나로 고민해 볼 요소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런데 결국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반감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전체로 특별연장근로를 계속 간다라면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이게 일몰제입니다. 마지막 시행에서 4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일몰되도록 돼 있고 궁극적으로 52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차이 있지만 52시간이 종착지이고,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일자리 늘어나는 양은, 총량은 저는 같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런데 만약에 특별연장근로가 남용이 될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남용하고도 남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이게 일몰로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도 지금 6조 7교대제도 등장하고 또 시설투자도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필요하지 이 60시간이 계속 가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정기간 한 3, 4년 안에 중소기업들도 다 준비를 해서 채용할 건 채용하고 시설 투자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노동계에서는 ‘지난번에 비정규직 근로자들 퇴직금 문제를 정부한테 약속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것은 논의하시면서 여야 위원님 간에 충분히 논의해 주실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봉홍 위원** 지금 그리고 오늘 같이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상정이 돼 있는 게 이번 법안소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한테 거기에 들어 있는 해고 회피 노력이나 정리해고 문제, 조건 강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와 있는 법안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근로기준법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해 주시면……

○**최봉홍 위원** 함께 논의하지요. 그것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 정부도 대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환경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빈병 그것 되겠습니까, 현재?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되리라고 봅니다.

○**최봉홍 위원** 적극 노력하셔서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폐휴대폰 관계도 좀 신경써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폐휴대폰은 저희가 제조물 책임까지 지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좀 고민점이 많습니다.

○**최봉홍 위원** 일단 산업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주**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안정된 일자리는 우리 모두의 꿈

입니다. 또 밥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노동구조의 문제가 마치 ‘경직된 노동질서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유연성을 더 확충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18년 전에 IMF가 왔을 때 유연성 정책과 법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했던 취지의 레퍼토리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비정규직이 너무 많습니다. 월급쟁이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불안정해도 너무 불안정합니다. 그런데도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해서 비정규직을 더 늘리자고 합니다.

지금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비정규직 비율이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 비정규직 개념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포괄적으로 더 넓게 잡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OECD 평균 11%인 것에 비해서 OECD 기준으로 해도, 시간제 노동자를 빼도 21%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21% 됩니다.

○**이인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노사정에서 합의했던 그 기준대로 되면 지금 37% 가까이 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32.5%입니다.

○**이인영 위원** 32% 정도 되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다음에 민간 노동연구소에서 하는 것에 의하면 거의 44.6%, 45% 가까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이인영 위원** 그런 점들로 놓고 보면 우리가 비정규직이 결코 적은 나라가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민간 연구소에서 쓰는 개념은 저희가 쓰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인영 위원** 아니, 민간 연구소는 빼더라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 비정규직 개념에는 ‘내가 봐서 내 일자리가 계속될 것 같지 않다’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장관님, 자꾸 여기서 학술강의 영터리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묻는 것에만 대답하십시오.

사실상 다른 나라에 비추어서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이 결코 적은 나라가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비정규직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도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해서 비정규직을 더 늘려야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는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이 비정규직을 늘리는 쪽으로 작동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적어도 장관님 입장에서요, 노사정 합의정신에 의해서 기간제법, 파견법 이런 비정규직과 관련한 것은 ‘노사정 간에 더 논의를 통해서 합의한 것을 국회 법률에 반영하기로 했으니깐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위원** 거기다가 법으로 정해야 할 저성과자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일방적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경영계에서 입법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유연화 차원에서 그런 요구를……

○**이인영 위원** 이것도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시행하기로 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저희들은 유연화 차원에서 접근은 안 되고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차원에서 하고 현재의 판결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설득을 해서……

○**이인영 위원** 법으로 정해야 할 취업규칙, 일반해고 이런 것들을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하면 이제는 비정규직 천국이라는 오명을 넘어서 해고 천국이라는 오명으로 빠지게 됩니다. 일자리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됩니다. 그것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그러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말씀은 대법원의 판결이 해고를 쉽게 한다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인영 위원** 대법원의 판결은요, 지금 장관님이나 정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정반대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저희들은 판결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인영 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정부나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저희들은 판결에 입각해서 다만 예측가능성을 높이자는 얘기

지 뭐 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인영 위원 일자리가 나빠지면 경제도 무너지고 가정도 파탄 나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은 산산조각 납니다. 우리 자식들의 노동의 미래를 위해서도 비정규직의 확산 그리고 쉬운 해고의 범람 이런 건 막아야 합니다. 어떠한 악법과도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게 우리의 입장이라는 점을 좀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적정임금 혹은 생활임금 등등과 관련한 노동부장관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우리 환노위 의결할 때도……

○이인영 위원 지난번 법사위원회에 가 가지고 대답하셨던 내용하고 우리 환노위에서 대답했던 내용하고 어느 게 장관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는 같은 취지로 대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적정임금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 조항이 다른 규제적 의미, 소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규제적 의미로 작동하게 되면 자치단체별로……

○이인영 위원 그것은 이미 상임위에서 확인했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린 말씀을 법사위에 가서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법사위에 가서는…… 법사위에서는 그런 얘기보다는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비치는 그런 대답을 하고 오셨는데 무엇이 진짜 입장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제가 환노위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규제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이 둘 또는 중앙과 지방자치기 최저임금에 둘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보세요, ‘최저임금과 다른 생활임금이나 임금을 정해 놓고 다른 규율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가 자치단체별로 어디는 최저임금, 어디에는 생활임금 이렇게 규율이 혼란이 올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발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전해철 위원이 ‘그렇다면 이 개정

안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확인하니깐 장관이 ‘그렇게 작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는 우리 환노위 의결할 때도 ‘이중으로 규율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저는 의결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인영 위원 이중으로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 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 그러니까요. 자치단체에서 이 법을 이유로 입찰을 할 때 다른 규율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법 따로 있고 이 법 따로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또 다른 법률과의 문제도 있고……

○이인영 위원 그것은 이미 확인했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그 취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지금 읽어 드린 게 어디 그 취지입니까, 이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그러니까 앞의 논의가 죽 그런 취지로 말씀은 된 거지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인영 위원 그러면 법사위에서 장관님의 의견 개진으로 인해 가지고 법안 보류된 것 이런 것들은 전혀 장관님 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보류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는 지금도……

○이인영 위원 법사위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는 환노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법사위에 계류된 법들이 빨리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이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은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분명히 돼 있고, 이미 그 법에도. 자꾸 다른 얘기 하시면서 혼란을 조성하니깐 법안 통과가 보류된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차관님도 같이 계실 때, 아마 차관님이 대답하셨던 것 같은데 대신증권 사례요, 대신증권 노조위원장님이 국회에 와서 참고

인으로, 그 당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방노동청 국정감사 할 때 발언하고 갔는데 그 뒤에 회사에서 해고 징계를 내렸단 말이에요, 징계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그것 관련해 가지고 부당한 노동행위가 없도록 살펴보고 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해고만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때 저희한테 사건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해당 사건이 저희한테 진정이나 고발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이인영 위원** 아니,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직접 제기한 것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하러 국회에서 국회의원 얘기를 듣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하신 대로 부당해고는 저희들이, 옛날에 해고 자체에 처벌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인지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인영 위원** 제가 ‘부당해고’라고 그러지 않고 ‘부당한 노동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 살펴보고 대답하신다고 그랬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것은 저희들이 어쨌든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거나 지금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엄하게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노조의 정당한 행위를 가지고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징계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이인영 위원** 조사를 해 보시고 보고를 하시란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부당노동행위라면 저희들이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

○**우원식 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조사를 안 해 가지고 또 물어보면 또 확인해 본다고 그러고 또 확인해 본다고 그러고, 지금 국정감사 때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똑같아요, ‘들어왔는

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겠다’……

○**위원장 김영주** 장관님, 지금 이인영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 빨리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이인영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여야 위원님들이 많이 씨름을 하고 계셨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년 기간제제를 늘리는 게 반드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거냐? 그 양산이 비정규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거냐 아니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는 거냐 좀 세밀하게 저도 뜯어보고 있는데요.

(김영주 위원장, 이인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런 현장의 경험이 제가 많잖아요. 많은데, 그러면 현재 2년만 하고 그만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만두는데 지금 야당에서 말하는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것은 2년 더 해 주면 그만큼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2년만큼 선호하는 것 아닌가 이 뜻 같아요, 그렇지요? 2년을 더 늘리니까 기업이 비정규직을 4년 가져가니까 좀 늘리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것은 좀 허공에 쏘던 공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시 말해 그냥 현재 2년 났다면 그 일자리 자체도 없앤다, 기업은. 그런 것도 현장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2년 더 늘려 주면 또 그 자리는 유지된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양산된다는 비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자 그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같이 논의를 해 봅시다.

그리고 예를 들면 파견에, 고소득 전문직 또한 고령자의 경우가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기업이 그것을 안 열어 주고 있으니 파견이라도 해 주면 일자리 느끼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는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렇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사오십대나 55세 이상 고령자들을 정규직으로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나 파견직 허용해 주면 그분은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가 생기니 해 주자 이런 점들을 정말 우리가 부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금속노조, 금속노련에서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는 게 뿌리산업 파견입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현대자동차·현중에 금형·주조·용접 하는 사람도 들어간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 현장은 대기업에도 파견직이 들어간다 이렇게 호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제대로 정부에서 안 알리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도 뿌리산업이 기본적인 대상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뿌리산업의 지정, 지금 산자부법이지요? 뿌리산업을 정해 놓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우선 그 뿌리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중에서도 그 직종, 금형·주조·용접에 한해서다라는 것을 빨리 지금이라도 노동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자동차는 자동차산업이고요, 조선은 조선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국노총 금속연맹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홍보해서……

○이완영 위원 그래서 지금 반대가 엄청 심하게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니까 절대 이것은 우리 대기업에, 제조업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이것을 명쾌하게 해 줘야 돼요. 이해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완영 위원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아까 유리병, 제가 우리 정책위의장 방에서 정책토론 할 때 이미 환경수석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못 받으셨지요, 제가 지적하는 것?

○환경부장관 윤성규 ……

○이완영 위원 유리병 수거가 제대로 집에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으면서 100원 올린다는 것

은 있을 수가 없다, 보고를 저보고 한번 해 주라 그랬거든요. 제가 이따가 마치고 실무자한테 듣기로 하고요. 거기에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상청장님!

○기상청장 고윤화 예.

○이완영 위원 소송되는 것 어떻게 돼 가요?

○기상청장 고윤화 저희들이 항소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승소했고, 그러면 마지막 남았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상고는 저쪽에서 상고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완영 위원 1분만 더 쓸게요.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기상청의 학벌 문제 아시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이완영 위원 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나요, 안 마련하나요?

○기상청장 고윤화 인사 문제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근본적인 수습 대책을 지금 마련했습니까, 작성 중입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저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그 대책 내용하고,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시는데 개선한 것을 저한테 한번 실적을 쥬 보세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과거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상청장 고윤화 같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서울대하고 연대 외에 다른 학교도 요즘은 있습니까, 출신이?

(이인영 간사, 김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상청장 고윤화 경북대도 있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도 있고.

○이완영 위원 그러면 그런 비율도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근본적인 대책 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예.

○이완영 위원 예,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2년에서 4년 늘릴 때 그 자리, 그러

니까 비정규직 자리가 늘어날 거냐 하면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일정 규모 이상은 정규직이 해야 될지 그다음에 기간제가 해야 될지, 파견 일자리…… 일자리 자체가 고정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화를 틀려면 임금체계를 바꿔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할 때 우리 환노위에서도 임금체계를 고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체계로 임금체계를 말 그대로 일한 만큼 보상을 받게 해 주면 꼭 정규직 비정규직 하지 않고 가급적 정규직 채용 쪽으로 유도를 할 거다,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고정화되어 있다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현재는 2년마다 바꾸게 되면 바뀌어야 되는 대상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년이 되게 되면 그 숫자가 줄어든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일자리를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비정규직으로 끌어내리게 되면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밀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현재 우리 일자리 구조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고, 만약에 기간을 안정하게 해주면 현재 정규직, 기간·파견, 그다음에 용역·도급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도급의 일자리가 중간으로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완영 위원 그러면 그런 장관님 말씀을 정리를 좀 해서 가지고 우리 노사나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리고 고령자 파견 관련, 전문직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55세에 나와서 퇴직해서 일자리를 찾는 분들 중에 3분의 2는 임시 일용이나 소위 창업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받는 소득이 원래 일자리에서 받던 소득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안정되게 일하자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요.

실제 선진국도 파견을 전면 허용해도 파견 비율이 그쪽 업종의 2%를 넘지 않고요, 저희도 1.2%에 이르기 때문에 다소 일부 확대했다고 그래서 파견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뿌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우원식 위원 임금피크제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입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임금피크제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단 불이익으로 보도록 하고……

○우원식 위원 불이익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는 그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것을 뭐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만들어졌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전에도 취업규칙 변경 지침에 그런 취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말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게 임금피크제의 실시 사항에 따라서 다 내용이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원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얻든지 직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되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불이익 변경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원식 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그것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서울대학병원에서 투표를 했어요. 부결됐어요. 그런데 이사회가 또

그냥 통과시켰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따르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이게 사안이 다 다른……

○**우원식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는 서울대병원의 경우에……

○**우원식 위원** 그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투표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원식 위원** 그래 가지고 부결 났는데 이사회에서 그냥 그것을 또 날치기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유, 서울대학병원은……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서너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원식 위원** 서너 가지가 뭐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선 사유……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취업규칙이 변경되는데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서 해야 될 근로기준법상 절차가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하다가 부결되니까 이사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설명을 들어보시고……

○**우원식 위원** 설명 같지 않아요, 그것은. 서너 가지가 있는데 서너 가지 중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사유에 있어서는 58세로 되어 있는, 현재 정년이 58세인데 정년을 2년 연장하면서 연장 기간에만 임금피크제를 하기 때문에 사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원식 위원** 노동부장관님, 장관님이 얘기하면 무조건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에 몇 살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그러면 그때까지 임금을 어떻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깎는,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건데,

돈을 더 주는 변경 하는 게 아니라 덜 주는 변경 하는 거니까 불이익 변경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정년연장 2년이라는, 2년이 있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 그것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그냥 마음대로 하게 하려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노동법 학자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도 지금 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처럼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장 기간 동안 임피제 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투표했다가 부결됐는데 다시 이사회에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다양한 노력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절차적으로 노력이 됐는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원식 위원** 서울대학교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다양하다고 그러지 말고, 서울대학교의 이 절차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금 현재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사유는 나름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면 장관이 뭐 하러 그 자리에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위원** 장관은 법에 따라서 그것이 맞으면 그렇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지금으로 판단이 안 된다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금 조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위원** 분명하게 회사에서 투표를 했다가 투표에서 부결되니까 이렇게 절차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것도 한 방법이라는 거지요. 노동조합한테 협상하자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거부해서 못 하고……

○**우원식 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걸 보니까 노동조합이 하자고 하는 것은 전혀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회사 쪽에서 하는 그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그러

면서 무슨 노동자 편을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소위 노동자의 관점을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사유는 충분히 해당된다고 보는데 절차가 지켜졌는지 여부를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우원식 위원** 만날 조사만 하지요, 만날 조사만. 노동부가 만날 조사만 해, 판단은 안 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조사해서 조기에 판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원식 위원** 경북대학교는 근로자 동의 절차 거쳐 가는 과정에 그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하자 병원 측이 임의대로 투표 기간을 연장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불이익 변경이니까 투표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기간을 연장했어요. 이걸 뭐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가운데만 딱 여쭙 보시니까 앞서서 사유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우원식 위원** 어떤 국립대병원들은, 대부분의 국립대병원들은 아예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로 남용의, 동의권 남용의 원리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할 만큼 충분히 협의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본다 그런 취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원식 위원** 노동부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거 행태를 조사하고, 지금 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우원식 위원** 그리고 이게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위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노동부장관이 이야기 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 적 없습니다.

○**우원식 위원** 노동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뭐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단이 소요되

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정해 줘서 현장의 혼란을 막아 줘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렇게 지내오면서 말을 애매하게 쓰는 거 많아요. ‘합의’, ‘협의’,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것은 안 하는 거거든요. 이기권 노동부장관을 보면 정치인 뻘치는 언어구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조사하라는 것도 저 몇 번 얘기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우리한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들어갔다고 그러면 조사해 보겠다고 하고 그 답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아직 조사가 안 끝났다고 하고, 그게 공무원이 할 일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공무원들인데 정권의 눈치나 보고 그러면서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판단해야 될 건 미루고 그런 사이에 여러분들이 지키겠다고 하는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피 흘리고 있어요. 농락당하고 있고, 기업주들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알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원식 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영주** 자, 우원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정권이 뭘 원하는지 잘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최봉홍 위원** 거기서 정권 얘기가 왜 나와요?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고용시장을, 노동시장을 선진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의견을 구해서 또 여당과 협의해서 만든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비판의 목소리도 쓴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법 기간 연장하는 거, 2년 더 연장하는 거 말이에요. 노동부 자료를 보면 외부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서 만들었는데 한 84% 정도가 실제 근로자들이 원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학회에서 기간제로 근로하고 있거나 했던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물어본 결과입니다.

○**권성동 위원** 어느 학회에서 그것을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고용노사관계학회에서 조사를 했고요. 또 저희들은 일선 감독관을 통해서 그 해당 근로자한테 전부 집중 인터뷰를 했는데 또 저도 여러 차례 해당 근로자들하고 언론이 있는 데서 인터뷰,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했는데……

○**권성동 위원**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자꾸만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법안 내용이 기간제 근로자를 확대한다, 지금 확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권성동 위원**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 기간 제한이 있는데 2년이 다 되면 계약을 해지를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다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정규직 구하기가 어렵고 또 기간제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구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좋은데 정규직 전환할 경우에 회사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크다 보니까 절충해서 4년으로 가자 지금 이런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기업들은 이것도 별로 원치 않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직수당 10%를 주도록 하기 때문에 경영계는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명문으로.

○**권성동 위원** 그러니까 경총 관계자가 제 방에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 이거 원치 않는대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용인하는 것이고 또 노사정이 타협하려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동의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뭐 대기업, 전경련이 원하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보

니까 대기업이 이거 원치 않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 노사정 합의와 그 후속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사실 경영계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80이라면 노동계 불만이 20, 8 대 2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근속기간 전체를 볼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 종료 비율이 2014년 69.1%, 2015년 3월 69.2%, 2015년 6월에 72.1%로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또 근속기간별 정규직 전환율을 보면 2014년도 통계인데 1년 6개월 미만이 10%, 1년 6개월에서 2년이 16.2% 그리고 2년 이상 24.3%예요. 그런데 35세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한 8% 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9%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5세 이상에 한정해서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 전환을 2년 더 연장을 시켜 주자라는 것이 안인데 이번에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 의견을 보니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이걸 하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공익 의견이 그렇게 제시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다음에 구직급여 지원 기간이나 수준은 확대되었는데 기여 요건도 좀 강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또 반대 논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금 저희들이 6개월 실업급여를 납부하면 최소한 4개월, 3개월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9개월 납부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그 9개월을 산정하는 기간이 현재는 18개월 내 6개월 된 것을 2년 내 9개월로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한 달간 정도 더 내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이 6개월 실업급여 내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우는 만약에 9개월로 되면 9개월로 상당수는 일하고 실업급여

받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애로가 있다면 정부가 다른 적절한 직업을 소개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도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 보완을 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다음에 파견제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 중에 6대 직종, 금형이라든가 주조 그다음에 도금 이런 산업은 대체적으로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이 산업을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거기 현장에 가보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싶어도 정규직 공모에 근로자들이 잘 응하지를 않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권성동 위원 그래서 뿌리산업 경영주들 입장에서는, 기업주들 입장에서는 ‘근로자들 너무 구하기 어렵다, 정규직도 구하기 어렵다’ 그런데 보면 파견은 또 많이 온다는 거예요, 파견은. 원래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권성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실을 좀 고려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을 현실에 맞춰 달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 당이 입법화를 한 겁니다. 6대 뿌리산업 회장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회장들이 저를 만나서 이거 꼭 해달라고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자기들도 정식으로 고용하고 싶대요. 그런데 일감이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해 가지고 일감이 확 늘어났을 때에도 정규직으로 다 채용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실태조사 해 봤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실태조사를 위한 합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파견 기간제도 그렇고 파견제도 그렇고 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 근로환경을 우리가 제대로 좀 살펴본 후에 여기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의견도 안 들어 보고 무작정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큰 잘못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기간 연장하고 파견 확대 문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성동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기간 연장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항공이랄지 특히 뭐 외국인 업체랄지 건설이랄지 이쪽에 기간제로 있는 분들은 2년 만에 내 능력을 다 입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경우는 기간이 연장되면 분사에 충분히 해서 다른 직종에, 정규직 일자리로 능력 있으면 옮겨서 정규직으로 될 가능성을 많이 제기를 해서 어쨌든 기간이 좀 연장되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진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 이상은 매 2년마다 옮겨 다녀야 되는 그 고용 불안을 좀 적게 옮겨드리게 해 주는 게, 그래서 정부가 해 줘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고용 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호봉제다 보니까 이분들은 여기서도 초임 받고 또 2년 옮겨 가면 거기서도 초임을 받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갈 소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그나마 4년까지 가게 되면 임금이 올라갈 소지가 커진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파견 관련해서 뿌리산업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뿌리산업이 1년에서도 이렇게 업종의 호황의 시기가 있고 또 불황의 시기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진폭이 큼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급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6개월 이내의 파견이라는 그 조항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을 주면서 저희들도 이 뿌리산업에 대해서 고용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해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안정되게 하면서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함께 보완해서 하려고 우리 고용서비스 쪽에서도 현장에 가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잠깐 화제를 바꿔서요, 환경부장관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오늘 경향신문 기사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북극곰 아시지요, 북극곰?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장하나 위원 아주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인데요. 이런 동물을 한국 기후 조건에서 특별한 냉방 장치 없이 키우는 게 곧 동물학대로 봐도 큰 무리가 없겠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적응하기 전까지는 학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응하고 나면 또 학대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요.

○장하나 위원 아, 북극곰이 한국 기후에 적응을 한다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를 들면 저희가 극지방에 가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장하나 위원 극지방에서 옷 안 입고 살아요? 장관님, 이 발언은 기록이 되면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 같은데 저는 해프닝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설악산에 동해 조망권 때문에 케이블카 놓으려고 그런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대답을 하세요?

○장하나 위원 제가 오늘 기사를 특별히 인용드린 것은 동물원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그런 기사들은 직원들을 통해서 들으시고 계시지 않은가 그 확인 차원이고요.

지금 많은 동물원들이 경영난으로 동물을 아사시키거나 아니면 쇼에 이용하면서 훈련 과정에서 학대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되고 있어서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2월에 세계일보라는 매체와 장관님께서 인터뷰 하시면서 동물원법 제정을 우리 환경부도 좀 추진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던 바가 있는데 그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당시 인터뷰에 동물원법뿐만이 아니라 식물과 관련된 것도……

○장하나 위원 아, 맞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렇게 해서 정부 입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장하나 위원 아, 그렇게 하신 바가 있고요?

지금 제가 언론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KBS·SBS·MBC 등 주요 언론, 동아일보, 그러니까 소위 보수언론·진보언론 얘기하는 것들 구분 없이 동물원법의 문제, 광범위한 동물의 동물권·생명권의 문제들이 참 최근처럼 이렇게 기사화가 많이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2월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동물원·식물원 같은 지금까지 아예 법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미비했기 때문에 좀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기대가 큰데 벌써 이렇게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이르러서 저는 일단 장관께서도 이 동물원법이 제정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공감을 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동물원법·식물원법 전문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법이 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환경부도 이러한 국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동물들이 함부로 방치돼서 학대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국민 정서상 반감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 빨리 마련하는 데 이번 마지막 국회에 환경부가 같은 공통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질의였는데요. 그런 기대를 가져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하고, 그 전에도 사실 관계부처끼리 얘기된 바가 사실 2년 여간 많습니다. 산림청이라든가 문화재청이라든가 해수부라든가 환경부까지 해서 지금까지 토론됐던 내용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많이 반영이 되면 그간의 토론 내용이, 토론회 과정이 유의미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장관님 관심을 제가 한번 여쭙 봤고요.

노동부장관님, 오늘 많은 질의 받고 계신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장하나 위원** 노동관계법 다섯 가지 외에도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최저임금 100% 적용받으셨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장하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작년 요맘때 해고 대란 때문에 정부에서도 작년 11월 24일에 경비근로자 고용불안 해결한다 해서 대책 마련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리신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래서 첫째, 당시에 발표한 고용안정 대책이 계획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그 실적 효과 등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서 아파트 경비원의 해고를 좀 효과적으로 막으셨는지, 그 사항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금년에 예산도 증액이 되고 또 고령자 고용지원금 기간도 연장을 해서 그 부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활용해서 우리 나이 드신 경비직들이 해고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가 전국의 2만 개 넘는 아파트단지에 일일이 개인 편지도 써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관리비 3000원 더 내서 경비아저씨들이 일을 계속 하게 하자라는 그런 모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제가 아주 최근에 아파트 경비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서 오늘 이런 질의를 특히나 드리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발표를 하시고, 사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믿고 안심을 했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어려움을 토로를 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이용해서 임금인상분을,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100% 적용받는 만큼 휴게시간이 줄었다든가 사실 경비 업무뿐만 아니라 청소 아니면 택배 받는 업무에서부터 하여튼 감시단속근로자로 볼 수 없는 업무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감시단속직으로 적용받는 것 자체도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셔서 첫째, 감시단속 승인 과정 그리고 승인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그 감시단속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적용 제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일단 장관님

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4년 아까 말씀하신 그 고용안정 대책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제가 아까 자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그간의 진행된 상황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것하고 제가 두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실태조사 있지요, 감시감독직 관련해 가지고 실제 경비 업무만 하고 있는지 그 외 업무는 어떤 것들을 더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노동부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은 얘기들은 너무 부정적인 경우, 감시단속직 적용할 수 없는 경우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처리 중인 아파트 경비원들이 진정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장하나 위원** 그래서 관련 사건, 진정 건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새정치연합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정부가 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것을 낸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관광휴양 거점 그쪽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의미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석현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자연공원 등 에다가 적용되는 그런 입지 규제를 완화를 하는 거예요, 절차도 간소화하고, 개발부담금도 감면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해양

관광진흥지구 내에 국립공원이 있을 때 국립공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환경부장관의 협의로 같음하도록 이렇게 의제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것이 국립공원 환경 보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 환경이 망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국립공원에 대해서 환경 보전하는 절차를 다 무력화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면 해상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그런 면보다는 개발·이용하는 쪽에 역점을 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 지금 공원자연보존지구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통계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어떻든 이렇게 되면 해상국립공원 자연 보전이 되겠는가 걱정을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해도 민간 사업자들은 해안 경관이 좋은 지역은 이미 국립공원으로 많이 지정이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정부안과 같이 의제처리 한다는 것을 지금 정부안과 같이 명문화해 놔 버리면 민간 사업자들이 국립공원 포함해서 어떤 개발계획도 앞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시그널로 이해를, 정부 방침의 중대한 변화라고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가 도입이 되면 민간자본에 의해서 영리우선의 개발사업이 활발히 일어날 텐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해상국립공원이 보존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없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국토부장관이 직접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직접 받지 않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게 해 놔는데 저희가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 가지고 중요한 사안 같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환경부가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거를 것입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협의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말하자면 환경부에 어느 정도 하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요식행

위로 절차만 밟고 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요, 법문 가지고 보면.

지난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할 때도 실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데도 충분히 이것을 심의 못 하고 졸속 심의해 가지고 국립공원위원회 표결을 강행한 것인데 이제는 아예 국립공원위원회 표결도 없이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은 거라서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했어야 하지 않는가……

이게 국토부가 낸 법이지만 지금 환경부하고 어디가 관계있는 법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것은 국토부, 국토해양이기 때문에……

○**이석현 위원** 원래 국토부에서 낸 정부안이지만……

○**환경부장관 윤성규** 국토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이석현 위원** 환경부에 이것을 미리 법안 내기 전에 의견을 물어 왔을 텐데 이것은 강력히 반대 했어야 할 그런 법안인데 그렇게 반대 안 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를 해서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것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로 포함될 수 있게 상한치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이 많은 비율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길게 얘기 못 합니다.

환경부는 환경을 지키는 게 목적이지만 개발이익을 추구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기준을 두지 않고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놔버리면 국토부는 앞으로 ‘환경부하고 의논했습니다, 협의했습니다’ 하고 다 그냥 개발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대책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저희들이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노동부장관님, 기간제를 2년 플

리스 2년 하면 정규직화가 오히려 촉진된다, 그것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통계적으로는 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률이 높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많은 기간제로 근무하는 분들한테 상담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기업에 들어간 경우에 사무보조 같은 경우는 사무보조 직렬에는……

○**이인영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그 얘기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인영 위원** 두 가지라면서 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직수당제도를 했는데 기업이 2년을 연장해 놓고 정규직 전환을 안 하면 이직수당을 10% 줘야 되는데 전환을 안 하면서 연장해서 활용만 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규직 전환으로 꽤 작동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게 거짓말 같은 게요 말은 그럴 듯한데 현실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선 2년 기간제 사용하고 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33% 낮아요, 대략.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별로……

○**이인영 위원** 통계자료를 저하고 다시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2년 뒤에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들을 2년 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정규직화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냥 비정규직 상태로 둘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2년 더 하면 이직수당까지 줘야 되는데……

○**이인영 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그렇게 들으세요? 그렇게 자기 하고 싶으신 얘기만 생각하시니까 그렇지요.

지금 2년 기간제 사용하고 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30%가 된다고 쳐 보자고요. 그보다 더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정

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 안 하고 2년 더 기간제로 쓸 것 아니에요. 비정규직 상태로 그대로 둘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

○**이인영 위원**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는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 얼핏 하시던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이인영 위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비율보다는 비정규직 비율이 더 늘어나게 되지요.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33% 정도는 정규직화해야 되는데 정규직화 안 하고 2년 더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정규직 비율이 줄어들고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지요, 당연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지금도 1년 만에 수습이나 인턴 형태로 들어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그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이 되듯이 그 기업의 형편에 따라서……

○**이인영 위원** 그것은 4년 뒤의 얘기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그게 2년 됐던 게 4년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노사 당사자와 많은 협의를 해서 그것이 그쪽으로 4년으로만 다 간다 그렇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이인영 위원** 지금 그 귀를 자꾸 막고 계시니까 그런데요. 저는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다시 논란을 벌이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 32.7%면 기간제 2년 사용한 사람 중에서 30%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사람들조차도 다시 2년을 더 추가로 기간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정규직 상태로 더 유지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정규직 비율이 다시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것은 저는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인영 위원** 그래서 아까 일시적으로라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점을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다른 취지라고 그러니까 제가 의사록을 다시 확인할 텐데, 그런 식으로 되면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예컨대 32.7%라고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민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44.6% 이런 부분들이 45% 되

는 부분들은 가령 뿌리산업에서 42만 명 그다음에 관리직 전반에서 450만 중에서 5500만 원 이상 고연봉의 이런 사람들 68만 명 이렇게 하면 100만 명 이상이 다시 비정규직 상태로 고용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정규직 비율이 최소한 많으면 한 5% 이상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그러니까……

○**이인영 위원** 그런데 비정규직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나 파견 기간을 안정화시켜 주면, 지금 용역근로자들도 비정규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근로자들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인영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 얘기를 좀 들어 보세요.

지금 장관님 얘기하신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만 해도 한 열 번 이상 하신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저는 그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인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시적으로라도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되면 예컨대 지금 비정규직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정부 통계로 30%인데 33% 이미 되어 있는데다가 한 5% 이상 늘어나서 그게 40% 정부 통계로 되고 민간 통계로는 50% 이상 55% 가까이 늘어나게 되면 이 비정규직 상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급등해서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노동부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몇 % 정도를 유지할 때 노동 유연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략 30% 이내에서 묶어야 되고 그런 수준에서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유지하고 있어야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들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꺾등으로도 안 들으시고 그냥 이런 상태로 가 가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한 5%에서 10%로 늘어났을 때 그것이 갑자기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로 확 오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기간제나 파견제 그 법을 터도 그 문을 더 터도 아무 문제가 없고 심지어

는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만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다 사실이고 왜 높은 이유를 보면 선진국하고 달리 두 가지 이유에서만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연성뿐만이 아니고 인건비 활용 차원에서 동시에 활용되기 때문에 인건비 활용 차원에서 활용되는 사유를 없애 주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이 정규직 노동시장의 비율과 비정규직 노동시장 비율을 한꺼번에 형평성 있게 하게 되면 굳이 기업들이 기간제 파견이나 도급으로 안 갈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계약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기간 연장이나 이 부분이 말 그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저는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중간 단계로 올라올 효과가 있고 또 미미하나마 상황에 따라서 일부 근로자들이 정규직이 되는 비중이 통계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이 절대 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1분만……

지금 이것을 정쟁의 문제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인영 위원** 국가 차원에서의 심각한 어떤 지금 시간의 문제들, 최근 앞으로 2년 후에 이 문제들 속에서 이 비정규직 정책을 잘못 써 가지고 이게 확대됐을 때 예컨대 5% 10% 이런 것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갑자기 사회적인 혼란의 문제로 오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관님은 전혀 그런 문제가 우려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임금으로 들어간 비정규직은 없애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냐 기업이 이윤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쪽으로 가는 거냐 똑같은 동전의 양면의 논리예요. 그것을 자꾸 끊어내려고 하시는데 끊어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 말이지요, 사용사유 제한하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임금에 차별이 없고 심지어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시간당 더 높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상시 지속적 업무는 이미 기왕

에 정규직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하고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이상한 얘기만 하시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도 외국의 선진 사례처럼 만약에 비정규직을 쓰게 되면 그 코스트가 더 들도록 해서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게 하자라는 게 기본 취지로 이번 법안에 전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분명하게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다양한 장치를……

○**이인영 위원** 어느 정도 비용을 더 들게 할 거예요, 비정규직 쓰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써 가지고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을 쓰게 되면 차별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이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 쓰고 있는 부분들은 다 비용의 고부담 이런 부분들로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인영 위원** 그거야말로 훨씬 더 불가능한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게 하려면 정규직 노동시장이 호봉제로 되어 있으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숙련도가 떨어져도 처음 1호봉하고 비교하니까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체계가 직무나 성과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거기에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비교대상이 직무 성과로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인영 위원** 혼자서 기와집 짓는 말씀이시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
○**위원장 김영주** 이인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더……

우원식 위원님, 기회 드릴 테니 잠시만요.

제가 아직 질의가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고 참 많이 갑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에 대해서 심의가 끝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최저임금에 있는 근로자들의 거의 100%가 비정규직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시장이 정말 임금에 대해서 차별을 받고 모든 복지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께서 얘기하시는 시간제 근로수당이라든가 복지 부분 이런 게 정규직하고 똑같이 된다 그러면 아무도 국회에서 비정규직 양산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너무 막연하게 지금 고용노동부장관이라고 보실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노동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나 이런 갑갑한 생각이 듭니다. 좀 신중하게…… 장관님께서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원식 위원님 3차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이론과 현실이 다른 게 아니고 장관님이 거짓말을 하셔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비정규직법을 만들 때 사유 제한으로 할 거냐 기간 제한으로 할 거냐 갖고 엄청나게 논쟁을 했습니다. 기간 제한으로 했어요. 그런데 기간을 1년으로 할 거냐 2년으로 할 거냐 3년으로 할 거냐 4년으로 할 거냐 이것 갖고 엄청나게 논쟁했어요. 그래 갖고 2년으로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장관 그때 국장이었잖아요. 왜 2년으로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우원식 위원** 장관께서는 비정규직을 오래 할수록 정규직 전환률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2년에서 4년으로 하면 정규직 전환률이 높아진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2년으로 정할 때 왜 정했느냐 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평균 재임기간이 2.4년이예요. 그것 지금도 확인해 보니까 마찬가지로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5년 8월 달도 보니까 2년 4개월이예요, 2년 4개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2년이 넘어가서 3

년, 그때 3년 안 한 이유도 그겁니다. 그러면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기업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는데 2년 4개월 넘어가면 관두고 관두고 이러기 때문에 4년 하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비정규직 써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도 2년 하면 숙련된 노동자를 더 쓰고 싶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한꺼번에 사유 제한을 하면 제일 좋은데 사유 제한하면 비정규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임신·출산 이렇게 몇 가지 사유를 제한하고 나머지 정규직으로 하면 이것은 고용 대란이 온다 그래서 기간 제한으로 하면서 2년으로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4년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길게 할수록 정규직 전환률이 높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매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비정규직을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생겼느냐 하면 아까 이인영 위원은 33.4%를 얘기했는데 그게 1년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사람이 2년 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율이 2010년에는 21%에서 2014년에 33.4%가 된 거예요. 그냥 모든 비정규직이 그런 게 아니고 1년 6개월 넘은 노동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300인 미만 사업체로 가면 21.4%에서 41.4%로 늘었어요. 이것을 4년으로 하면 기업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비정규직을 쓰고 그리고 그나마 만들어진 이 효과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전 경련은 이 효과를 없애고 싶어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쓰고 싶으니까요. 그것을 지금 장관이 이명박정부 때부터 계속 그 앞잡이로 이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그때 걱정했던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생기니까 외주·파견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속 대책을 만들자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것 못 만든 게 정말 통탄할 만큼 원통합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에서 더 후퇴했어요. 따라서 지금 비정규직 대책을 만들려면 기간제법 보완 대책은 간접고용 방지하는 데 그리고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것을 안 하고 기간을 늘리는 것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니까 정말 그것은 나쁜 장관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 줄인다고요?

파견, 사실은 기간 연장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파견법이에요. 파견법에서 55세 이상 고령층 소득 기준 5400만 원 이상 이것 지난번에 비정규직 종합대책 때 내놓은 것 아니에요?

55세 이상 고령자가 328만 명입니다. 그리고 전문관리직이 452만 명인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이 고소득층 기준으로 하면 68만 명쯤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느냐 하면 저기 한번 보세요. 기자 논설위원 대학교수 학교 교사 이런 사람들을 다 파견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안 늘어납니까?

이런 정말, 이런 말 쓰고 싶지 않은데 정말 개떡 같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파견의 나라 기간제의 나라 정규직을 쓰지 않아도 되고 기업들 마음대로 비정규직 쓰게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공무원인 교사도 파견 대상,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파견직으로 내몰릴지 몰라요. 지금 이게 되면 공무원들도 파견으로 교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장관도 파견으로 하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국장 자리는 뭐 안전할 것 같습니까? 효율적이지요, 효율적이야. 아무 때나 자를 수 있고. 지금 이런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장관은 이 업무에 대해서 참여정부 때부터 다, 그전부터 다 관여했던 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우원식 위원 평균 재임 기간이 2년 4개월밖에 안 되는데 4년 늘리면 늘어난다고요? 그 중간에 전부 다 관두지.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담당 국장부터 이 일을 해 왔고 그 뒤로도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끝없이 대화를 해 왔습니다.

○우원식 위원 계속 시도하다가 실패했지, 우리가 막아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런데 우리가 그 법을 만들 때는 다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현장에서는 우리 진보 언론이나 또 비정규직 연구를 하는 기관에서도 기간을 제한했더니 정규직 전환되는 것은 아주 소수고 다수가 도급이나 용역으로 풍선효과가 커진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풍선효과를 방지해 준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쪽에 일하는 분들도 다, 그분들하고 끝없이 얘기를 해 보면 그분들이 고용 안정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희망을 들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파견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상 업종의 파견 종사 비중이 1.33% 정도 됩니다. 선진국도 1%에서 2% 정도 됩니다. 지금 일부 고소득 전문직이 없다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견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그분들에게 일을 찾는 기회와 비교를 해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절실하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1분 더 드리세요.

○우원식 위원 기간 제한을 해서 정규직이 대폭 늘어날 거다 우리 그렇게 기대를 못 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숙련된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비숙련 노동자들은 쉽지 않을 거다, 대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그것조차 싫어서 간접고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원식 위원 막는 후속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 논의 하다가 정권이 바뀐 거예요. 이게 2007년에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지면서 후속 논의하는 과정에 2007년 말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에요. 그때 이것을 좀 더 후속 대책까지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 만들어서, 후속 대책까지 갖어야 좀 더 효과가 나는 건데, 정규직으로 하려면 사유 제한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서 사유 제한으로 해서 단기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규직으로 바꾸면 산업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것을 다 논의했던 분이……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질의 그만해 주시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런데 고용률 70% 이상을 통해서 일자리를 통해서 국민이 행복을 느끼고 있는 선진국들이……

○위원장 김영주 장관님, 지금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고 지금 우원식 위원 얘기하니까 거기에 답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토론장이 그게 본론이 아닙니다.

다음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장관님, 이번의 5대 입법 개정안이 큰 틀에서 정말 근로자한테 불이익하게 한 거냐, 경영자만 유리하게 한 거냐, 지금 계속 우리가 여야의 논의 중에 보면 특히 야당 위원님들의 우려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 아닌가 이게 지금 주요 쟁점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가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적으로 한국노총 지도부에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언급하신 것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 와서는 이게 보기에 따라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질타를 하시는데 저는 파견 문제, 지금 방금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 파견근로자의 나라가 될 것 같다 이런 우려를 얘기하시는데 보십시오.

그러면 독일 일본 영미 이게 파견에 제한도 없고 대부분 허용돼 있는데 지금 이런 나라가 파견근로자가 몇 %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드린 대로 1%에서 2%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규범화해서 자꾸 논쟁만 하지 말고, 그러면 기업은 바보입니까? 이런 자리는 정규직 이런 자리는 파견직 이런 자리는 기간제 이것은 기업이 알아서 판단해서 그 기업이 수익 내는 데 원만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좀 더 준다고 해 가지고 모든 비정규직 나라가 될 것 같고 이렇게 과대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제가 전자에 물어본 것도 이번에 이렇게 개정안이 되더라도 크게 비정규직 일자리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확신이 드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는 비정규직, 만약에 이 부분이 비정규직 당사자 입장에서 불리하다라면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원식 위원** 가만히 안 있으니까 난리 난 것 아니야, 지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저희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지만 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대국민들한테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오늘도 우리 환노위에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명확하게 장관의 논리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근로자들이 20% 정도 양보했다는 부분은 5대 입법안에 그 부분이 들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65개항에 크게 합의를 하면서 임금피크제랄지 또는 임금 절약, 상위 10%는 임금 절약을 통해서 청년 채용 확대에 참여하자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우리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에 있는 근로자들의 양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 채용을 위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기업의 고쳐져야 할 부분은 대·중소기업이나 정규직 비정규직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 있어서 저는 8 대 2라고 보고 있고 기업의 양보가 훨씬 크다고 보고 있고……

○**이완영 위원** 제가 정년 60세법에 따른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이익하나 그 문제도 저는 좀 장관님 견해하고도 달라요. 제가 대표입법 발의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58세가 사기업에서 정년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법으로 60세까지 해 준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불이익한게 저는 거의 없다, 장관님은 실제로 그 2년 늘어나는 것하고 따져봐야 되는 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점도 제가 대표발의할 때도 대부분 근로자들은 그것 불이익하게 보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의 인식이었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더 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빠르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지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우리가 수급 요건을

180일에서 좀 늘리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지급 기간 그리고 지급 수준도 올리기 때문에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일부 선원, 외국 선원 같은 경우는 6개월로 계약을 많이 한다네요. 이런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270일로 늘리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게 근본적으로 박탈된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직종에 대해서 좀 배려할 그런 여지가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보기에선 선진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 1년 이상 소위 지급 요건, 납입 요건을 1년 이상 하고 있어서 납입 요건은 엄하게 하고 지급 기간을 늘리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만 약에 직종별로 좀 어려움이 있다면 세세히 한번 저희들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1분만 더 쓸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특수직종에 대해서 270일, 최소한 270일 이상으로 상시 계약이 되고 있는 직종,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제가 선원연맹을 예를 듭니다, 선원 근로자들. 그것을 파악을 해서 가지고 그분들 수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그분들 차단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 같다는,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선원연맹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쪽으로 제기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수급을 그만큼 내야 지급하는 것도 많이 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근본적인 취지는 맞는데 일부 직종에 한해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정부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실업급여가 6개월간 납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시 당초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계약 관행이 형성이 됐는지 아니면 그 일 자체가 6개월씩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를 판단해서 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 일 자체가 그렇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정확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 장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 차관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28일에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이 회의에 관계 부처 차관들 참석했다는 이런 보도자료가 있는데 우리 차관님도 참석하셨습니까? 기억 못 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장하나 위원** 그렇다면 이게 국정감사 때 노사정위원장한테는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장관님, 지금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 파견업종 및 기간 규제 완화 그리고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해고 요건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등 해서 이 여러 가지 사안이 애초에 경제단체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던 사안이라는 것을 장관님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중에 상당 부분은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하나 위원**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경제단체에서 처음에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간제 2년·2년 4년 늘리는 부분을 사용자들은 바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사용자단체에서 원했던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2년을 추가로 연장했을 때 정부하고 여당이 했던 것처럼 이직수당, 퇴직금 외에 별도 10% 이직수당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 아니고……

○**장하나 위원** 그냥 연장만 하기를 바랐던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냥 기간은 당사자한테 맡겨 달라, 선진국처럼, 그런 취지였습니다.

○**장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강구한 것이 그러면 사용자 측이 원하는 대로 2년 늘려주되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직수당 부분을 정부에서 제안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한 56%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아까 호봉제라든가 급여체계가 외국과 다르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차이가 현저히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점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고 또 상대적인 비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4인 가구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 여건에도 못 미치는 150만 원 이하의 임금 수준인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급여가?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전체 정규직과 전체 비정규직을 시급으로 하면 그 차이가 나는데요. 동일한, 비슷한 일을 하고 1년 일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하면 차이가 10%밖에 안 나고요, 90%에 해당됩니다. 그 얘기는 비정규직들은 1, 2년 내에 다 잘려서 다른 데로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 반복되는 과정에 초임을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장하나 위원** 장관님, 제 질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150만 원이 못 돼서, 평균이, 너무 저임금에 시달려서 비정규직 곧 저임금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것 부정을 하시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직종별로 다른데요. 그래서 비정규직들이 내가 월급이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기간을 늘리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영주** 1분 더 드리세요. 마무리하십시오.

○**장하나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그 임금을 인상하는 방편으로 4년 이상 올리자 이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현저히 무너져 있는 사회다 이런 생각도 사실입니다. 같은 내용의 업무를 하고 있어도 예컨대 교사와 기간제교사 차이가 현격하듯이 공공부문부터도 아직 그 원칙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 이런 한국사회에 대한 냉철한 진단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께서 2년·2년 4년으로 늘리는 것이 노동자에게 좋다고 제안을 할 때 많은 노동자들이 불신을 하는 이유가 ‘그러면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그런 노력은 우리 정부가 얼마나 해줬는데?’ 여기에서도 많은 불신이 시작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수차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이직수당 부분도 그렇다면 현재 2년인 상황에서 이직수당제도를 도입을 하

면 훨씬 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속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노동부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않고 '4년으로 늘리는 대신 이직수당이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진정성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장관님이 했던 얘기에, 장관님이 하셨던 얘기에 저도 나름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또 비정규 노동자들은 장관님도 많이 만나시고 국회의원들도 의정활동을 위해 많이 만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장하나 위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정리하는 마당이니깐요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일관되게 상임위에서 장관님한테 계속 드리는 말씀은 비정규직 비율의 사회적인 임계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2.7%, 32.5% 이것하고 40%가 공식 통계에서는 굉장히 큰 양질의 어떤 변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비공식 통계로 45% 이 정도 되는 것이 50%, 52%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굉장한 의미에서 양질의 변환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냥 단순히 그 퍼센티지, 양적인 이런 것만 증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다가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그게 그냥 확 사회적인 문제로 와 버린단 말이에요. 87년 4·13 호헌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게 세상을 바꿔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비율의 문제들을 함부로 잘못 관리했다가는,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런 사회적인 큰 문제들로 온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단지 산업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저는 이 정권이 이 문제를 이번에 잘못 건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 총선 때 아주 혹독한 시련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대통령께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겠다 등등 말씀하셨던 것이 그것이 일종의 예방조치처럼 됐던 것인데 그게 지금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내년 총선에 엄청난 여파들에 직면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것은 정치세력이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 당연히 책임지는 이런 과정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가 아주 극심한 그런 혼란으로 간다 이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비정규직 비율을 잘못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성장의 기반 이런 것들도 크게 흔들려 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노동생산성이 한마디로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들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30% 정도의 비정규직 비율이면 이미 충분히 노동유연성이 보장되어 있는 거라고. 다른 나라의 3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40%, 50%로 더 올려야지만 직성이 풀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굉장히 무모한 노동정책을 펴는 거다 이거지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은 기업에게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인 것 같지만 결국은 노동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죽여 가지고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꼴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장이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보는 그 흐름하고 저희가 대책으로 내놓은 반전하고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이 비정규직이 줄지 않고 있는 부분은 소위 말해서 정규직 그다음에 법의 보호를 받는 기간·파견·도급 영역인데 기간·파견의 규제에 대해서 하도급과 용역으로 너무 지나치게 가고 요즘은 개인 도급까지 벌어집니다. 개인 간에 기업 간에 도급을 하는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특고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가지요.

그래서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중간 일자리로라도 가게 하고 거기서도 기회가 되면 정규직으로 가는 고용 형태의 반전이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시장 노동 규율하고 비정규직 시장을 같이 규율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표치는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3차 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더 질의하시려고 합니까, 의사 진행발언입니까? 다 끝났는데요.

○우원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 1분만 하고요.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3분 드릴 테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고 질의하십시오.

○우원식 위원 이번에 내놓은 법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비정규직 이런 것 진짜 제대로 하려면 초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주에 15시간 이하 하는 사람들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거든요. 이것 좀 제대로 합시다.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법, 이것 용역 파견해서 회사 바뀌면 계속 잘리는 것,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그냥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법 이런 것 좀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적정임금제, 소위 건설현장에서,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이 돈 얼마 받는지를 정해 놓은, 미국에서 하는 제도 이런 것 합시다.

다단계 하도급을 그대로 다 방치해 가지고 도대체 중간에서 어떤 놈이 얼마씩 먹는지도 모르고 맨 끝으로 가면 우리나라 사람을 쓸 수가 없어서 베트남 사람 데려다 쓰고, 이것 사람 고용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사람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고 월급을 너무 조금 주려니까 못 가요. 그래서 그 돈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부터 하세요, 이런 것부터. 그런 것 하면 좀 바뀝니다. 어떠시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15시간 미만 일하는 소위……

○우원식 위원 이것 딱 그냥 하겠다고 이러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이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과 더불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장기과제로 우리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는 것만 하면서 비정규직 얘기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참 우리 정부가 가증스럽습니다.

○이완영 위원 하겠다고 그러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리고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가낙찰제를 적정가 종합심사낙찰제로 하고 있고요.

○우원식 위원 그것 가지고 되지도 않고요. 미국에서 공공 건설현장에서 쓰는 적정임금제, 직접시공제 이런 것 제대로 하게, 직접시공제야 다른 데서 해야 되는 거지만, 적정임금제 도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하시면 현장에서 신뢰가 생길 거예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법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민생법안은 그렇게 외면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고요.

환경부장관님, 오늘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서 좀 섭섭할까 봐……

아까 부의장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국감 때 이미 지적했던 내용이어서 더 얘기하지는 않고, 이런 동·남·서해안 개발 특별법 이것에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환경부장관 협의로 갈음하는 것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간사업자들에게 국립공원을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소리고요. 그리고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색케이블카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부대조건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법이 국회까지 올 때까지 환경부가 도대체 뭐했는지 정말 이것은 답답한 일이고, 이것

더 물어볼 필요 없이 우리 위원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5항까지 125건의 법률안과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사한 의안 중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의사일정 제7항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제22항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제50항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해서는 양당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심상정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양창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도록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기상청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권성동 위원님, 김용남 위원님, 양창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최봉홍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손충덕 수석전문위원과 보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권성동 김영주 김용남 심상정
 양창영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이완영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장하나 최봉홍 한정애

○청가 위원(1인)

민현주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안효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관 윤성규
 차관 정연만
 기획조정실장 백규석
 환경정책실장 이정섭
 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자원순환국장 신진수
 기후대기정책관 최홍진
 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환경정책관 박광석
 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차관 고영선
 기획조정실장 한창훈
 고용정책실장 이재홍
 노동정책실장 권영순
 정책기획관 김종열
 국제협력관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 정형우
 고용서비스정책관 권기섭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나영돈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문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 박종길
 노사협력정책관 임무송
 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경덕

기상청
 청장 고윤화
 차장 정홍상
 기획조정관 이우진

기 후 과 학 국 장
지 진 화 산 관 리 관

김 성 균
윤 원 태